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2016. 2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머 리 말

2016년부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으로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조기 퇴직으로 인해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였던 중·장년층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상용근로자를 주요대상으로 하므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기업의 고용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 임금피크 협상도 순탄하지 않은 점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년 의무화 시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소득보장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일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단순히 개인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만을 다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과 정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노후소득 개선 정책으로 개인형 사적연금(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2014년에 발표된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으로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개편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6년 2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강 호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4

1. 연구배경 및 목적 / 14
2. 주요 연구내용 / 15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 17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 18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18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27

III.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 48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48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52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58

IV.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 63

1. 신개인연금(가칭)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64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73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77

V.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 발전 방향 / 80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81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84

VI. 요약 및 결론 / 87

| 참고문헌 | / 89

■ 표 차례

- 〈표 I -1〉 연구수행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 16
- 〈표 II -1〉 주요국의 정년 연장 사례 / 19
- 〈표 II -2〉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 20
- 〈표 II -3〉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대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 21
- 〈표 II -4〉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 23
- 〈표 II -5〉 사업장 규모별 추가 인건비 부담 / 25
- 〈표 II -6〉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 26
- 〈표 II -7〉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현황 / 27
- 〈표 II -8〉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현황 / 27
- 〈표 II -9〉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 28
- 〈표 II -10〉 노후준비부족의 가장 큰 원인(1순위) / 29
- 〈표 II -11〉 현재 소득 수준 대비 노후소득의 수준 / 30
- 〈표 II -12〉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자금 예상액의 자금원 구성비 / 31
- 〈표 II -13〉 가구주 연령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 32
- 〈표 II -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12. 3Q기준) / 33
- 〈표 II -15〉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 34
- 〈표 II -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 34
- 〈표 II -17〉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년 7월 말 기준) / 35
- 〈표 II -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12월) / 36
- 〈표 II -19〉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현황 / 37
- 〈표 II -20〉 가구별 개인연금 가입률 / 38
- 〈표 II -21〉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 38
- 〈표 II -2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 39
- 〈표 II -23〉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 43
- 〈표 II -24〉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 43
- 〈표 II -25〉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 / 44
- 〈표 II -26〉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 44
- 〈표 II -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 45

■ 표 차례

- 〈표 Ⅱ-28〉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및 구매 / 46
- 〈표 Ⅱ-29〉 추가적인 혜택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 46
- 〈표 Ⅱ-3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 47
- 〈표 Ⅲ-1〉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2013년 기준) / 48
- 〈표 Ⅲ-2〉 사업장 규모별 정년도입 현황과 유형 / 49
- 〈표 Ⅲ-3〉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 50
- 〈표 Ⅲ-4〉 정년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정(16년 추정치) / 51
- 〈표 Ⅲ-5〉 분석가정(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 / 54
- 〈표 Ⅲ-6〉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전후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개선효과 / 56
- 〈표 Ⅲ-7〉 정년의무화 조치에 따른 연령별(54~59세) 소득(저축)개선 효과 / 57
- 〈표 Ⅳ-1〉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63
- 〈표 Ⅳ-2〉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65
- 〈표 Ⅳ-3〉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가정 / 67
- 〈표 Ⅳ-4〉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 68
- 〈표 Ⅳ-5〉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 69
- 〈표 Ⅳ-6〉 50대(50~59세)의 기초통계 / 71
- 〈표 Ⅳ-7〉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 71
- 〈표 Ⅳ-8〉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 세액공제액 수준 / 73
- 〈표 Ⅳ-9〉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4~59세) / 74
- 〈표 Ⅳ-10〉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0~59세) / 76
- 〈표 Ⅳ-11〉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 78
- 〈표 Ⅳ-12〉 신개인연금 가입 전후의 탈빈곤 효과(노인전체) / 79

■ 그림 차례

- 〈그림 Ⅱ-1〉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 20
- 〈그림 Ⅱ-2〉 평균근속년수 국제비교(2010년도) / 23
- 〈그림 Ⅱ-3〉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 29
- 〈그림 Ⅱ-4〉 가구주 연령별 재무준비지수 변화 / 29
- 〈그림 Ⅱ-5〉 이상적인 은퇴준비의 시작 시기 / 31
- 〈그림 Ⅱ-6〉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 31
- 〈그림 Ⅱ-7〉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 37
- 〈그림 Ⅱ-8〉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 40
- 〈그림 Ⅱ-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 41
- 〈그림 Ⅱ-10〉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 45
- 〈그림 Ⅲ-1〉 정년연장의 소득보장효과 / 60

Income Guarantee Effect of Deferred Retirement and Private Pension Polity

Korea has extended the minimum retirement age to 60 since 2016.

This age extension is very encouraging in the sense that many middle-aged workers who could not prepare for their old age due to early retirement can have more chance to prepare for later lives.

However, there are some issues that need to be solved. For example, extension of the minimum retirement age is applied to only fully employed workers, employment costs increase, negotiations about introducing salary peak system with labor unions are not easy, and so on.

This paper is very valuable, because this study deals with the retirement income guarantee that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urposes in introducing the system of mandatory minimum retirement age.

In particular,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in the sense that this paper analyzes various effects on the governments and industries as well as individual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lacement rates of the additional private pension benefits are increased by 4.8%p~5%p. Second, the additional private pension makes the pension markets more activate. Third, the additional private pension makes elderly poverty rates decrease.

These results show that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like private pension, need to be activated.

요 약

I. 서론

- 고령화 및 노후준비 부족 등에 따른 대응 방향으로 2016년부터 정년연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해소할 문제들이 상존해 있는 실정임.
 - 특히,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만으로는 퇴직대상자들의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25~30%, 퇴직 및 개인연금은 15~2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정 노후소득 대체율(70%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함.
 - 신개인연금의 가입으로 발생할 경제적 효과를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봄으로써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됨.
 -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정년의무화가 법제화되었으며 선진국들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임.
 - 노동시장 입직연령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으로 근로기간이 짧아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영국과 미국은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스페인은 67세, 프랑스는 62세, 일본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바 있음.
- 정년연장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문제에 초점을 두었음.
 -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 대체성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한 대부분의 실증분석 결과 세대 간 고용 대체관계는 불완전 대체 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일 직장 내에서는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감소 및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의 후속조치로 임금피크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를 지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연공성이 강한 편임.
- 그러나 근속연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5.1년, 2011년 기준)이어서, 현실적인 연공성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자의 경우 임금 대비 생산성이 낮아 임금체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는 연령을 45~46세로 보고 임금피크를 통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 정년연장으로 인하여 사업주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게 됨.

- 전용일 외(2013)에 의하면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함.
- 강성호·정원석(2014)에 의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인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함.
- 그러나 여기에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다면 실질적으로 발생할 추가적인 기업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준비시기도 늦고 노후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부정적인 응답이 39.8%인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은퇴준비시기는 취업직후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은퇴준비시기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매우 늦은 편임.
 - 노후 생활 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이나, 고령층일수록 보유자산이 실물자산에 치우쳐 있어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노후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하나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연금자산 준비 수준은 매우 낮음.
-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이 일천하므로 정년연장 대상자는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퇴직연금의 가입률은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51.6%(2014년 기준) 수준이어서 가입률은 낮은 편임.
 - 퇴직연금 수령 시 일시금 수급 비율은 95.2%(2014년 기준)이 높아 연금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음.
 -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률뿐만 아니라 유지율 또한 매우 낮은 편임.
 -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가입률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40대에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며, 10년차 유지율은 52.4%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지원 수준은 매우 낮은 편(OECD 34개국 중 23위)이어서, 추가적 연금세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가 노후준비 기회로 활용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년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에 달해 최대한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노후준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도 42.1%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금융상품 구입을 통해 준비할 의향이 있음을 보였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 60세 미만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임.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음.
 - －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정년연장 대상자를 추정해보면 14만 8천 명이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추정됨.¹⁾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정년의무화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년연장에 따른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와 중·장기로 보아, 2016년을 시점으로 55~59세인 경우에는 단기, 54세 이하인 경우에는 중·장기로 구분함.

1) 자세한 추정방법은 본문 참고.

- 단기적으로 2.1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1.4%에서 23.9%(2.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3.3%에서 4.3%(1.0%p), 중·장기적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됨.
-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3.5%p 증가), 중·장기적으로 37.1%(6.7%p 증가)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대체율 7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 5.3%p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정년연장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증가할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자산의 추가 적립 외에도 근로소득의 추가 발생에 따른 신규 자산 축적이 기대됨.

- 본 분석에 따르면 54~59세 임금근로자 중 조기퇴직 비율이 10.8%라는 점에서 이들이 정년의무화에 따라 임금근로자로 유지된다면 이들 집단의 평균 근로소득은 12.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노후를 위한 신규 자산 축적(저축개선효과)이 발생하게 될 것임.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의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정년의무화 이전에 비해 최대 6년 정도 근로기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노후 준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준비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장수화 속도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연금자산의 확보가 요구됨.

- 연금자산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는,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정년 의무화로 발생할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유분(저축개선효과분)을 개인연금 형태로 축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 의무화로 인해 사업주의 추가적 부담이 당연히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개인연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IV.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 개인연금 추가가입(신개인연금)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는 연령별(연장기간 효과), 임금피크 적용여부별, 연금수급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함.²⁾

- 2016년 54~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임금피크 미적용)은 12.0~2.0%(전체 평균 7.3%),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3.0~0.5%(전체 평균 1.8%)일 것으로 추정됨.³⁾
 - 동일 조건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각각 11.0~1.8%(전체 평균 6.6%), 2.8~0.5%(전체 평균 1.7%)로 추정됨.

2)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기(2016~2020년) 상황에서 추정되는 금액임.

3)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면 다소 감소하는 수준으로 추정됨.

○ 신개인연금에 현행과 같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정년연장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 평균 931천 원)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됨.

– 가장 선호되는 세액공제율인 15%⁴⁾를 적용할 경우 1,808천 원~371천 원(전체 평균 1,164천 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한편, 2016년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이 허용될 경우 50~59세인 근로자가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11.4%,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받을 경우 2.9%(전체 평균 1.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⁵⁾

■ 신개인연금을 도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증가할 것이며 특히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보다 효과적일 것임.

○ 50세의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종신연금 형태로 수급할 경우 약 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임.

○ 여기에 앞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합산한다면 전체 소득대체율은 임금피크 미적용 시 42.1%(37.1%+5.0%), 임금피크 적용 시 40.5%(35.7%+4.8%)일 것으로 추정됨.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 산업 측면에서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전체 매출액 산출을 위해 2016년의 인구 구조, 가입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분석함.

■ 동 가정 하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2016년 매출액은 52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85억 원)으로 추정됨.

4) 강성호 외(2015b).

5)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면 다소 감소하는 수준으로 추정됨.

○ 여기에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2016년 매출액은 1,017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974억 원)으로 추정됨.

■ 한편,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가입기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6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14년 기준 54세 가입자의 총매출액은 51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476억 원)으로 추정됨.

○ 여기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면, 50세는 최대 10년의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매출액은 1,069억 원(임금피크 적용 시 1,018억 원)으로 추정됨.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세제혜택 제공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빈곤 완화효과를 살펴보았음.

■ 54~59세인 근로 빈곤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탈빈곤할 비율(탈빈곤율: 빈곤 → 비빈곤)은 증가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7%가,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2.4%가 탈빈곤하는 것으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탈빈곤율은 각각 4.2%, 3.2%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 가정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노인 빈곤자 수/노인 수)은 감소함.

○ 5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5%, 20년 동안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48.7%가 빈곤율로 추정됨.

○ 한편, 50세부터 추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빈곤율은 각각 47.8%, 48.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V.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한 개인연금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 개인연금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여유자금의 부족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강제성이 약하여 가입과 해지가 많기 때문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공·사 간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요구됨.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고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하도록 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매칭 기여방식에 의해 개인연금 납입 보험료를 지원해줌으로써 IRA 개설 비율을 3%에서 10% 전후로 증가시켰음.

- 세제지원은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나 장기적인 노후빈곤 완화를 통한 미래의 복지재원 감소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세제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부터 점진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임.
 - 또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 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음.

-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 형태로 인출하도록 장려해야함.
 - 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외에는 규제가 없고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없음.
 - 우선적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지급 시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에서 일시금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 3.3%)하는 것으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연금수급 공백을 채워줄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으나 판매실적은 답보 상태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 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살펴볼 수 있음.
 -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
 -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트레연금 정책
 -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특성을 반영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며 영국의 비표준형 연금이 좋은 사례임.

■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임.

○ 이들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고 퇴직연금의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됨.

– 미국의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 보험료가 저렴한 고연령거치연금(ALDA)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VI. 요약 및 결론

■ 본 연구는 정년연장을 노후소득 제고의 기회로 삼아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이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효과와 신개인연금 가입 시 발생할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정년연장 이후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음.

○ 첫째, 정년연장 대상자(14만 8천 명 추정)의 노후소득 개선효과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합산소득대체율(임금피크 적용)은 중·장기적으로 35.7%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이들의 추가적인 저축여력은 정년연장 대상기간 동안 연 12.1%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둘째,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신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후소득은 개선되고 매출액 증가로 연금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빈곤 완화 수준을 추정함으로써 정부의 세제지원 정당성 논리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의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틀 내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특화된 정책방안을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년의무화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후준비가 충실하지 못하였던 퇴직연령 세대들의 노후준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의무화 이전 상황에서는 조기 퇴직자의 증가(현실적인 정년연령 53세)와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로 향후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퇴직에 직면한 50대 중반 세대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고, 고령화·장수화⁶⁾ 과정에서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4월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이하 ‘정년의무화’)함으로써 노후준비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의무화⁷⁾는 기업의 노동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은퇴자산 증가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하다. 사업주는 퇴직 급여 및 사회보험 부담 증가의 문제를 안게 된 반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는 근로안정성 제고와 연금자산의 증가가 기대된다. 이로 인해 임금피크제, 청년일자리와 대체성(고용대체성) 등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고 정년연장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년의무화는 무엇보다 노후준비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6)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65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장수화는 기대여명이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통계청 보도에 의하면 지난 40년 동안 0세 기준 기대여명은 연간 약 0.5세씩 증가하여 왔음(강성호 외 2015a).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참조.

점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소득이 제고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번 정년의무화로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적정⁸⁾ 노후소득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적립 IRP)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고, 이를 활성화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년연장의 의의, 대상자들의 노후준비 수준, 그리고 정년제 인식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의 의의를 살펴보고,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고용대체성, 임금피크 논쟁, 기업부담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정년의무화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과 정년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둘째, 정년연장이 대상자들에게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년연장 대상자 규모를 추정한 후 이들 대상자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를 추정한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후준비 여력이 존재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저축가능 수준을 추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정년연장 대상자가 신개인연금⁹⁾을 가입하게 될 때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

8) 노후소득보장 관련하여 ‘적정’이라는 용어는 흔히 ‘목표’, ‘필요’와 동일개념으로 정의되어 혼용하여 사용됨(강성호 2012). 여기서는 적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함.

9) 현행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적립IRP)과 별도로(혹은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개인형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기존의 제도와 구분하여 편의상 ‘신개인연금’(가칭)으로 표현함. 물론 신개인연금의 도입을 통해 노후보장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개인형 사적연금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음.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방향에서 다루겠음.

해 개인, 산업, 정부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신개인연금은 현행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적립 IRP)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거나 혹은 이와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형 사적연금¹⁰⁾이라 할 수 있겠다. 즉, 정년연무화 이후 추가적으로(혹은 별도로) 연금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형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현행 제도와 구분하여 편의상 신개인연금으로 표현한다.

경제주체별로 신개인연금의 효과를 분석하게 되면, 개인형 사적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개인(대상 근로자)입장에서는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과 빈곤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빈곤 완화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추가가입으로 빈곤 노인이 감소하게 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논리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신개인연금의 매출효과 분석을 통해 연금산업의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I-1〉 연구수행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연구수행 단계		주요 연구내용
환경 분석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Ⅱ장)	-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검토 - 정년연장 세대의 노후준비 평가 - 정년제 및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 정년연장 세대는 노후준비 서둘러야!
경제 분석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통계분석 (Ⅲ장, Ⅳ장)	- 정년연장으로 인한 소득개선 효과(정년연장 자체 효과) • 대상 근로자 규모 추정 • 정년연장으로 인한 국민·퇴직연금(체계화됨), 저축(체계화 필요) 가능 수준 - 정년연장 후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방향 설정 • 적정노후소득 수준에 대한 충분성 판단 • 향후 노후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개인형 사적연금 활성화'(신개인연금) 필요성 제기
		- 신개인연금의 경제주체별 파급 효과 분석 •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효과(근로자) • 신개인연금의 시장 확대 효과(보험산업) •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빈곤 완화 효과(정부)

10) 본 연구에서는 개인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을 통칭하여 부르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표 I-1〉의 계속

연구수행 단계		주요 연구내용
대응 방향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 (V장)	-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공·사연금 협력, 지원 확대를 통한 가입강제 및 활성화, 연금화 강화 -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 정년연장 세대에 특화된 연금상품 개발,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50대 및 베이비부머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정책개발에 초점을 두되,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개인연금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다른 코호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 연금 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내용 및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앞의 〈표 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및 기대효과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동대체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정년의무화를 노후준비의 기회로 삼아 산업과 정부의 협력하에 정책 개발을 논의하는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 기업부담 및 근로자의 자산증대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많지 않고, 무엇보다 정년의무화를 고려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정년의무화로 인해 대상자의 노후문제가 완전히 해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정년의무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준비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도입된 정년연장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조만간 다가올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¹¹⁾에서 노후 문제를 헤쳐 나갈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1)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각각 7% 이상, 14% 이상,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함(우리나라 2014년 현재 12.7%).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가. 정년연장 의의

2013년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정년 조항이 의무화되었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 정년제가 노·사 간 협의에 의한 임의제도로 운영되었으나,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의무화함에 따라 고령노동의 가치를 새로이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강성호·정원석 2014).

이렇게 정년의무화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에 기인한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80년 62세에서 2010년 80.7세로 증가했다. 근로자 평균연령도 1980년 28.8세에서 2010년 40.2세로 늘어났다. 현장 근로자가 20대에서 40대 이상으로 전환된 것이다.¹²⁾ 이는 급속한 고령화 과정에서 노동시장 입직연령도 높아졌고, 이로 인해 과거와 같은 정년기간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기간이 짧아져 노후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스스로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 선진국 사례를 주목할 필

12)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305061821221&code=115>.

요가 있다(강성호 2015b). 영국은 2011년 이후 정년제를 폐지하였으며, 독일과 스페인은 65세에서 67세로, 프랑스는 60세에서 62세로, 일본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¹³⁾

〈표 II-1〉 주요국의 정년 연장 사례

국가	변경 전	변경 후	도입 시기
독일	65세	67세	2012~2029년
스페인	65세	67세	2013~2027년
일본	60세	65세	2006~2013년
영국	65세	폐지	2011년
미국	70세	폐지	1986년

주: 프랑스는 60세에서 2010년에 62세로 증가함.
자료: 이재호(2015).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근로자가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을 채우기도 전에 조기퇴직한다는 점에서 정년의무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조기퇴직하는 이유로는 그 동안 정년제가 노사 자율에 의해 수행되는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명예퇴직·권고사직의 남용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이승길 2013). 이로 인해 실제 주된 사업장에서의 퇴직연령은 53세,¹⁴⁾ 54세¹⁵⁾여서 회사에서 정한 평균정년연령인 57.6세¹⁶⁾보다 3~4세 정도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강성호·정원석 2014). 그러나 이번 정년연장 조치는 과거처럼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13) 윤상하·이지선(2011).

14) <http://nie.chosun.com/information/information01.asp?mode=view&pidx=6000&pdepth=0&pageNow=10&schk=&skey=>.

15) 방하남 외(2012).

16)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임(전용일 외 2013).

나. 정년연장 관련 이슈들

정년연장과 관련한 이슈들로는 청년 근로자와의 고용대체 문제(청년실업 연장), 임금피크 적용 논쟁, 사업주 부담증가, 대상 근로자의 소득개선 등 다양하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이슈들이 생기는 이유는 그 파급효과가 경제주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즉,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는 그 만큼 소득이 증가할 것이나, 고용대체성이 클 경우 청년실업을 부추길 수 있고, 사업주 부담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임금피크 적용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이 또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기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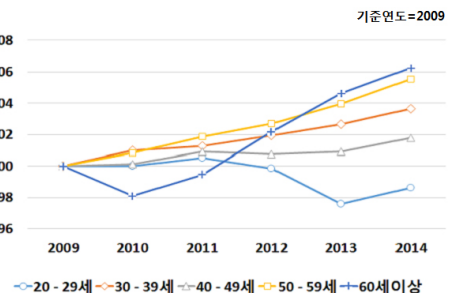
1)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고용대체성 논쟁

다음 <표 II-2>, <그림 II-1>에서는 연령대별 고용률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상대적 고용률은 50대, 60대에서 가장 높고, 30대, 40대에서도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율이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세대 간 고용대체성에 관한 논쟁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29세	58.2	58.2	58.5	58.1	56.8	57.4
30~39세	71.3	72.0	72.2	72.7	73.2	73.9
40~49세	77.7	77.8	78.4	78.3	78.4	79.1
50~59세	70.3	70.9	71.9	72.2	73.1	74.2
60세 이상	36.7	36.0	36.5	37.5	38.4	39.0

<그림 II-1> 2009년 이후 연령대별
고용률 추이(2009~20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해당 연도; 김주영(2014) 재인용.

여기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의하면 생산요소 간에는 완전대체, 불완전대체, 완전보완의 관계 중 어느 하나로 나타날 수 있다. 세대 간(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도 이러한 생산요소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세대 간 고용대체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한 경제 내에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누군가가 고용되면 다른 누군가는 실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노동총량설’(a lump of labor theory)에 근거한다(Munnell and Wu 2012; 김준영 2011).

그러나 상당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완전 대체 관계¹⁷⁾에 있거나 오히려 상호보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표 II-3>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II-3>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대체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

구분	국내연구	해외연구
대체 관계가 약하거나 오히려 보완관계	지은정(2012), 박종현 외(2012), 안주엽(2011), 김준영(2011), 권혜자(2010), 김대일(2004), 현대경제연구원(2010)	Hebbink, G. E(1993), Kalwij et al. (2009), Joustin et al. (2010), Börsch-Supan et al. (2010), Gruber et al. (2010), Oshio et al. (2010)
대체관계가 존재	이찬영 외(2011)	Card & Lemieux(2001)

자료: 지은정(2012); 금재호(2011) 등을 보완하여 재구성.

기존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두고 볼 때 세대 간 고용 대체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노동수요는 고정된 것이 아닌 임금수준, 생산성,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끊임없는 변화가 있다(Kapteyn et al. 2004; Kalwij et al. 2009; Joustin et al. 2010; 김준영 2011).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와 1990년대 유럽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실업 감소를 유도하였지만 실질임금의 상승을 초래하여 오히려 총고용을

17) Card and Lemieux(2001)는 CES 생산함수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여 세대 간 고용에 불완전 대체 관계(imperfect substitutes)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김준영 2012).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김준영 2011).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고용대체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년연장 의무화로 세대 간 고용대체성이 존재한다는 시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정년의무화가 장기적으로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상생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선행연구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다소 세대 간 일자리 대체가능성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산업 내가 아닌 동일한 직장 내에서 본다면 세대 간 일자리의 대체가능성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년연장이 되면 기업에게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은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금재호 2011). 즉,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신규채용 감소와 임금피크가 제기되고 있다.

2) 임금피크 적용 논쟁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의무화의 후속조치로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즉, 법 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등)의 제1항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년의무화에 비해 노사 간 협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권고조항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300인 이상 사업장¹⁸⁾은 당장 2016년부터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되나, 아직 현장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¹⁹⁾

고용노동부(2015)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은 2012년 16.3%, 2013년 17.0%로 나타났으며, 추후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40.1%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유형으로는 정년 연장형이 44.8%로 가장 높다.

18)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률: '12. 6월 17.8% → '13. 6월 18.5% → '14. 6월 23.2%

19)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5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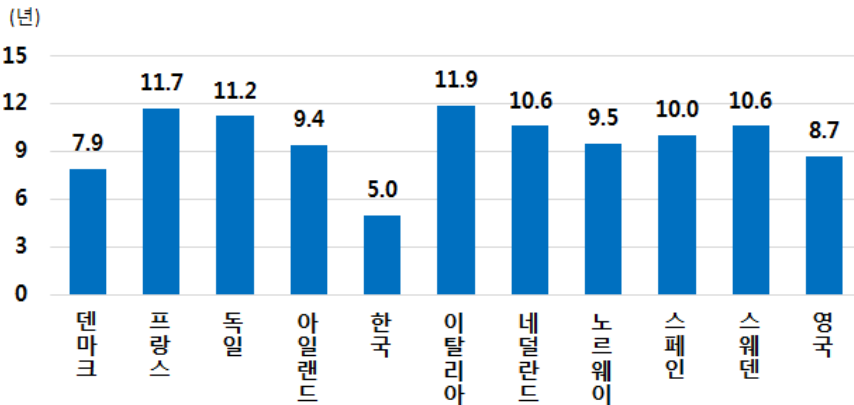
〈표 II-4〉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구분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혼합형
도입률(%)	14.0	44.8	20.1	21.1

자료: 고용노동부(2015).

한편, 정년연장에 따라 임금피크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임금체계를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근속 1년차와 근속 20년차 근로자의 임금 차이가 2.1~2.4배로 주요 유럽국(1~1.5배)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연공성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임금체계의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생산성에 관계없이 임금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연공성이 강할수록 정년연장 도입 시 임금피크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임금피크의 정도에 따라 신규고용(청년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림 II-2〉 평균근속년수 국제비교(2010년도)



자료: OECD Labor Force Survey; 한국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장인성(2012) 재인용.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근속기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림 II-2〉에서 보듯이 평균근속년수는 이탈리아가 11.9년으로 가장 높으며 프랑스 11.7년, 독일이 11.2년, 영국 8.7년 등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5.1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1년 기준)²⁰⁾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임금체

계의 연공성을 포함한 현실적인 근속연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연령별 임금 수준을 보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도 50세를 전후하여 임금피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직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임금피크를 경험하는 근로자가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성호 2015b).

또한 노동시장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의 주요이슈 중 하나는 이들의 임금대비 생산성이 낮으므로 정년의무화와 동시에 임금피크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²¹⁾ 이와 관련하여 안주엽(2011)은 50세에 생산성이 최대이나 생애임금 수준이 최대가 되는 연령은 54세로,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break-even)하는 연령은 45~46세로 보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2015. 6. 4)에서 발표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²²⁾ 응답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도입을 찬성한 이유(복수응답)는 ‘고용조정 없이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56.3%)’,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37.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정년연장 대상자의 실질적 고용안정과 고용대체성을 동시에 고려한 응답으로 이해된다.

또한, 임금피크의 적정 수준으로 ‘10~20% 미만 감액(39.0%)’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평균적으로는 16.5%가 감액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피크 도입연령은 55세가 43%로 가장 높았다. 기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이 매우 중요하였으나, 무엇보다 정부 지원의 확대(63.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²³⁾

이는 현실적으로 정년의무화에 따른 고용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 동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조사인 임금구조기본조사의 6.2년보다 다소 낮음.

21) 정년의무화는 기업에 대한 퇴직급여 증가로 노동비용의 추가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정진호 외 2011).

22) 관련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도 참고할 만함.

2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 6. 4) 참조.

3)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사업주) 부담 논쟁²⁴⁾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부담은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용일 외(2013)²⁵⁾에 의하면,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사업주)의 임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동 연구의 기본모형에 의하면,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첫해인 2016년(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기업의 인건비는 956십억 원~1,169십억 원, 사회보험료는 82십억 원~101십억 원이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0년에는 각각 7,239십억 원~11,286십억 원, 621십억 원~996십억 원이 추가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II-5〉 사업장 규모별 추가 인건비 부담

(단위: 십억 원)

구분	근속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3000인 이상	10년 이상	956	2,949	4,724	6,056	6,923
	2년 이상	1,169	3,602	5,794	7,467	8,635
30~299인	10년 이상	—	46	136	219	275
	2년 이상	—	358	1,055	1,703	2,194
30인 미만	10년 이상	—	7	20	33	41
	2년 이상	—	77	235	375	457
계	10년 이상	956	3,002	4,880	6,308	7,239
	2년 이상	1,169	4,037	7,084	9,545	11,286

주: 2012년 보수액 고정(2012년의 임금 수준으로 산출).

자료: 전용일 외(2013)의 p. 95 참조.

24) 정년의무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에 대한 분석은 '강성호·정원석(2014)'을 참고하기 바람.

25) 전용일 외(2013)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수혜자규모 및 기업의 추가인건비, 그리고 사회보험부담을 추계하고 있음.

〈표 II-6〉 사업장 규모별 추가 사회보험료 부담

(단위: 십억 원)

구분	근속기간	2016	2017	2018	2019	2020
3000인 이상	10년 이상	82	252	403	516	590
	2년 이상	101	311	499	643	743
30~299인	10년 이상	—	4.6	14	22	27
	2년 이상	—	34.5	101	163	209
30인 미만	10년 이상	—	0.6	1.8	3	3.7
	2년 이상	—	7.5	23	36	44
계	10년 이상	82	257	419	541	621
	2년 이상	101	353	623	842	996

주: 1) 2012년 보수액 고정(2012년의 임금 수준으로 산출).

2)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구성됨.

자료: 전용일 외(2013)의 p. 95 참조.

강성호·정원석(2014)²⁶⁾은 정년의무화 이후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을 추정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면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연간 1,927억 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 여기에 최종 소득의 70~90%로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1,349억 원~1,734억 원이 추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추가부담 논의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원금에 대한 것이다. 즉,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주 부담에서 동 지원금을 빼주어야 기업의 부담액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7,938개소 사업장의 78,971명(연인원 기준)에 대하여 31,108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임금피크제지원금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도 임금피크제지원금은 299개 사업장에 2,712명(12,494백만 원)이 지원되어 전년대비 사업장은 17.3%, 지원인원은 14.6%, 지원금액은 25.2%가 증가되었다.

26) 동 분석에서는 54~59세 근로자들 중 약 12만 2,000명이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의 정년연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함.

〈표 II-7〉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건수, 명, 백만 원)

구분	지원건수	인원	금액
2008년	54,023	273,945	48,062
2010년	59,923	217,559	43,688
2012년	74,094	210,161	45,965
2014년	35,545	78,971	31,108

자료: 고용노동부(2015).

〈표 II-8〉 연도별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현황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997	1,497	1,869	2,843	2,377	2,367	2,712
금액	3,032	6,488	7,861	8,624	9,763	9,985	12,494

자료: 고용노동부(2015).

정년연장으로 기업의 부담 등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상자의 노동생산성이 높고 지원금이 충분하다면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기업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임금피크 적용 시 이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²⁷⁾ 지나친 임금피크 적용은 오히려 조기 퇴직을 부추겨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현황 및 정년제 인식

이제 보다 미시적 측면에서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를 평가하고 최근 정년의 무화 등 정년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7) 정진호 외(2011)에 의하면, 55세 이후에 임금보다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기, 하수폐기, 건설(47.9%)'을 들고 있음.

가. 노후준비 현황 및 평가

1) 전반적 노후준비 현황

우리나라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는 세 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노후준비가 미흡하고, 노후준비 자체가 늦고, 준비를 하더라도 그 자산이 비유동성 중심이라 현금화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조사에 의하면, 정년연장 대상자인 54~59세의 노후준비 수준은 50대와 전체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이해되나, 노후준비에 부정적인 응답이 39.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II-9〉 노후준비에 대한 평가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대	54~59세
긍정	9.3	9.5	9.7
보통	41.6	47.9	50.5
부정	49.1	42.6	39.8
합계	100.0(1,200)	100.0	100.0(103)

주: 보험연구원(2015)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이들 정년연장 대상자들이 노후준비가 잘 안 되는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다음으로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²⁸⁾

28)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여러 조사들에서도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비, 결혼 비용 등이 동 연령대 노후준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음(류건식 2014;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참조).

〈표 II-10〉 노후준비부족의 가장 큰 원인(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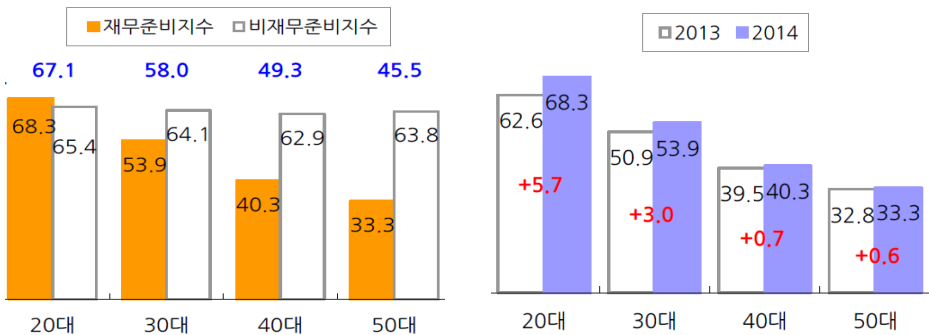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전체	50대	54~59세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양육비	41.3	51.5	43.9
근로기간은 짧고 수명은 연장되어	10.5	12.6	14.6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11.2	2.9	2.4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족	19.0	12.6	17.1
기타	18.0	20.4	22.0
전체	100.0(589)	100.0(103)	100.0(41)

주: 보험연구원(2015)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이로 인해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에서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의 재무준비 지수가 가장 낮은 33.3에 불과하였다.

〈그림 II-3〉 가구주 연령별 노후준비지수 〈그림 II-4〉 가구주 연령별 재무준비지수 변화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여기서 유의하여 살펴볼 사항으로는 이러한 재무적 준비지수가 전 연령층에서 전년에 대비하여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한다.

한편, 노후생활자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조사시점,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OECD의 경우 소득대체율 관점에서 노후생활자금을 근로기간 소득의 70% 수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험연구원(2015) 조사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소득대비 노후소득 수준(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전체의 경우 70~90%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42.3%),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경우는 50~70%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46.6%).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대체율 70% 전후에서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OECD의 권고 소득대체율 수준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11〉 현재 소득 수준 대비 노후소득의 수준

(단위: %, 명)

노후소득 비중	전체	50대	54~59세
50% 미만	15.6	14.9	13.6
50~70% 미만	37.5	43.0	46.6
70~90% 미만	42.3	40.5	38.8
90% 이상	4.7	1.7	1.0
합계	100,0(1200)	100,0(242)	100,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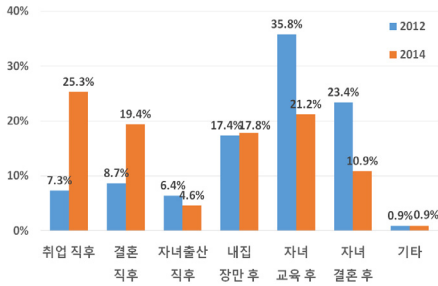
주: 1) 노후생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노후소득 수준으로, 노후소득 비중을 현재 소득 수준에 대비한 비율로 표현함.

2) 보험연구원(2015)의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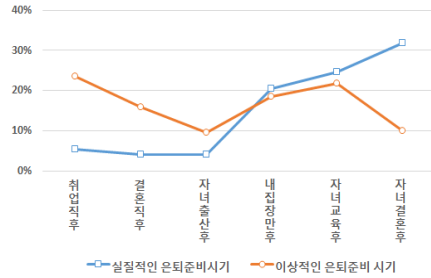
둘째, 현실적인 노후준비시기가 매우 늦다는 점이다. 이상적인 은퇴준비 시작시점을 취업직후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인 노후준비는 퇴직직전 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에 의하면,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으로 비은퇴자의 25.3%가 취업직후로, 21.2%가 자녀교육 후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은퇴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이상적인 은퇴준비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2012년 조사에서는 ‘자녀교육 후’가 35.8%, ‘자녀결혼 후’가 23.4%로 ‘취업직후’보다 앞섰으나, 2년 후의 조사에서는 ‘취업직후(25.3%)’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5〉 이상적인 은퇴준비의 시작 시기



〈그림 II-6〉 은퇴준비 시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상황과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은퇴설계관심은 자녀대학 이후 자녀독립기(50~60대)에 가장 높아 노후준비가 상당히 늦게 나타난다. 은퇴가구가 실질적인 은퇴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은 자녀결혼 후(31.9%), 자녀교육 끝난 후(24.7%), 집 장만 후(20.5%) 등 생애 후기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4).

〈표 II-12〉 가구주 연령별 노후 준비자금 예상액의 자금원 구성비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공적연금, 퇴직연금	36.2	40.6	37.7	41.6	39.8
보유 금융자산	5.2	6.9	10.5	12.2	10.3
개인연금 및 저축	51.0	40.9	31.2	18.8	29.2
주택연금	6.1	8	13.8	17.6	13.7
주택 외 부동산자산	0.6	2.1	4.8	7.8	5.2
기타자산	0.8	1.5	1.9	1.9	1.8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셋째, 비유동성 자산을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점이다. 가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노후 준비자금으로 활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노후 준비자금 중 평균 39.8%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및 퇴직연금에서, 29.2%는 개인연금

및 저축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50대의 개인연금 및 저축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이들 소득원에 대한 노후준비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나라 가구의 보유자산 특성을 보면 실물자산²⁹⁾ 중심이고 고령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여 노후 현금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전체 가구의 실물자산 보유비율은 73.2% 수준이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보유비율이 증가하여 은퇴세대인 60세 이상 가구주의 실물자산 보유비율은 82.4%(금융자산 보유비율은 17.6%)나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은퇴 이후 유동성이 약화되어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3〉 가구주 연령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및 구성비

(단위: 만 원, %)

가구주 연령대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점유율			구성비
전체	33,364	100.0	8,931	24,433	73.2
30세 미만	8,788	0.7	5,517	3,271	37.2
30~39세	23,115	12.3	9,016	14,099	61.0
40~49세	33,072	26.2	10,262	22,810	69.0
50~59세	43,025	32.5	11,159	31,866	74.1
60세 이상	33,660	28.4	5,935	27,724	82.4

주: 구성비는 실물자산/자산×100으로 산출함.

자료: 통계청,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이 중 금융자산의 보유 특성을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금·예금 위주의 구성을 보인 반면,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은 금융투자상품 및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금·예금 비율은 45.5%였으나, 미국 14.3%, 일본 55.6%, 영국 29.0%, 유로존 35.8%, 호주 23.0%로 우리보다 낮다. 이는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은 현금·예금을 중심으로 한 안전자산 위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9) 실물자산은 부동산과 기타실물자산으로 구성됨.

〈표 II-14〉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구성 비교('12. 3Q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유로존	호주
현금·예금	45.5	14.3	55.6	29.0	35.8	23.0
금융투자상품	27.1	53.9	11.8	14.0	28.6	16.0
주식	17.9	32.9	5.8	9.9	14.4	14.8
채권	5.7	8.7	2.2	1.1	7.0	0.2
펀드	3.5	12.3	3.8	3.0	7.2	1.0
보험·예금	26.7	28.5	28.2	53.5	30.1	56.6
기타	0.7	3.3	4.4	3.4	5.5	4.5

자료: 한국은행; 미국 FRB; 일본은행; 영국 통계청; ECB; 호주 통계청.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형태는 실물자산을 선호하고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은 노후소득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동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안전자산 중심의 운영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충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동성과 안전성이 높은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나아가 연금소득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공·사연금 가입 현황

앞에서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전반적 노후준비를 볼 때 유동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노후소득원으로서 유동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연금자산 수준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민연금은 사각지대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지 않다. 2015년 말 기준으로 18~59세 인구(32,994천 명) 중 공적연금 적용 사각지대는 49.4%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세대인구 전체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자'), 공적연금비적용자, 납부에 외자, 체납자를 제외한 특정시점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적용자 규모(잠재적 수급권자)는 50.6%에 이른다.

〈표 II-15〉 공적연금 가입실태(2014년 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94천 명(100.0%)					
비경제활동 인구 10,626천 명	경제활동인구 22,871천 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천 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01천 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 명			특수직역 연금 1,444천 명
		납부예외자 4,665천 명	소득신고자 16,386천 명		
			장기체납자 1,253천 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 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천 명(49.4%)				소계 16,692천 명(50.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b).

정년연장 대상자는 아직까지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직접적인 추계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II-16〉은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을 전망하고 있는데, 28.2%(‘11년) → 35.7%(‘20년) → 47.1%(‘30년) → 59.8%(‘40년) → 70.8%(‘50년)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보건복지부 2012. 7).

따라서 향후 15년 후인 2030년경에도 과반수가 국민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고, 35년 후인 2050년경에도 약 30%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16〉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률 전망

(단위: 천 명)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65세 이상 인구	5,701	6,624	8,084	12,691	16,501	17,991
연금수급자	1,605	2,115	2,889	5,981	9,864	12,744
수급률	28.2%	31.9%	35.7%	47.1%	59.8%	70.8%

주: 65세 이상 인구는 (‘11년)행안부 주민등록인구, (‘15년 이후)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중위 가정임.
자료: 보건복지부(2012. 7).

한편, 현재(201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월 34만 6천 원이며, 특례노령연금을 제외하더라도 48만 4천 원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기초노령연금³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60만 원 수준에 그쳐 공적연금만으로 기초생활³¹⁾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17〉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2015년 7월 말 기준)

(단위: 천 원)

구분	계(특례제외)	노령연금(특례제외)	장애연금	유족연금
최고	1,827	1,827	1,362	875
평균	333(421)	346(484)	430	258

주: 특례는 특례노령연금으로 제도 도입 초기에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여임.

자료: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국민연금 공표통계 2015. 7).

특히 정년연장 대상자만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가입하기 시작한 시기가 1999년(전국민연금시대)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세대의 가입기간은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는 향후 소득대체율이 40%³²⁾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한 분석에서 베이비부머의 현재 평균 가입기간은 약 10년 미만으로 추정되며, 이들 세대가 은퇴하여 국민연금을 수급할 2020년, 2025년의 노령연금액은 월평균 각각 43만 7천 원, 52만 원으로 분석되고 있다.³³⁾

한편, 이러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2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였지만 역시 충분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는 급속한

30)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이 낮은 기준으로 하여 70%만 받게 되며, 최고 금액은 20만 원 수준임.

31)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17,281원임(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 8. 29).

32) 국민연금은 향후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일 것으로 계획함.

33) 이태열 외(2014)에 의하면, 보건복지부(2012. 7)를 활용하여 연도별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2012년 현재화)을 산출하고 있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연금 혹은 사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둘째, 사적연금의 경우 가입률, 유지율이 낮고 일시금 수급 경향이 있다. 먼저 퇴직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의 도입률³⁴⁾은 16.3%이며, 가입률³⁵⁾은 51.6%로 낮은 편이다. 2014년 퇴직연금 도입률은 전년(25만 4,138개소) 대비 8.4%(2만 1,409개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사업장(169만 개소³⁶⁾) 중 16.3%(27만 5,547개소) 수준이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도입률은 78.8%,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도입률은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인 미만은 11.7%).

〈표 II-18〉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2014년 12월)

(단위: 천 개소, %)

구분	10인 미만	10 ~ 29인	30 ~ 99인	100 ~ 299인	300 ~ 499인	500인 이상	합계
도입 사업장 수(A)	168	73	26	6,7	1,0	1,2	276
전체 사업장 수(B)	1,436	182	56	11,4	1,5	1,3	1,687
도입비율(A/B)	11.7	39.9	46.3	58.7	69.0	89.5	16.3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는 2014년 말 535.3만 명으로 2013년(485.2만 명)보다 50.1만 명(10.3%)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상용근로자(1,037만 명³⁷⁾) 대비 51.6% 수준이어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전체 사업장 대비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비율.

35)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

36) 2012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37) 2012년 사업체 노동실태현황(고용노동부 통계 DB).

〈표 II-19〉 유형별 퇴직급여 수급현황

(단위: 명,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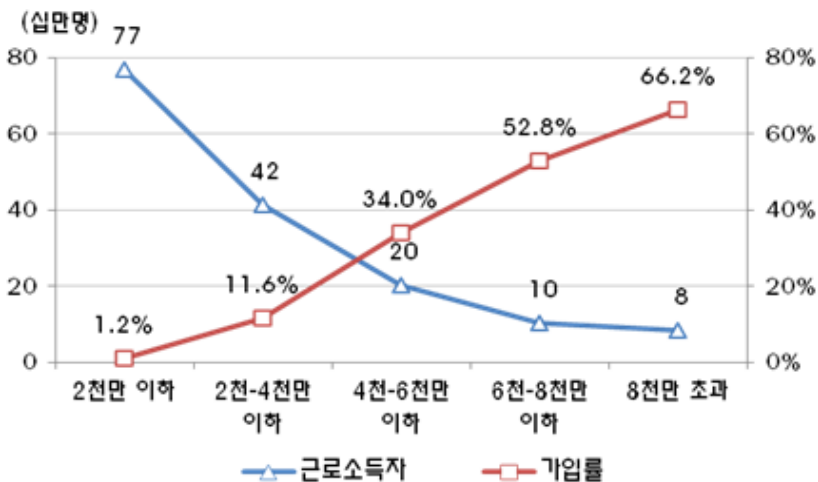
구분	일시금수급		연금수급		합계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수급자 수	금액
'14. 3/4분기 (비중)	34,096 (95.9)	5,329 (98.9)	1,452 (4.1)	60 (1.1)	35,548 (100.0)	5,389 (100.0)
'14. 4/4분기 (비중)	32,103 (95.2)	4,675 (98.5)	1,611 (4.8)	69 (1.5)	33,714 (100.0)	4,745 (100.0)
증감	△1,993	-654	159	9	-1,834	△644

주: 분기 말 현재 연금 수급자 수치.

자료: 금융감독원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http://pension.fss.or.kr/fss/psn/main.jsp>).

수급측면에서 보면, 2014년 4/4분기 기준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 명)의 95.2%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기별 전체 퇴직급여 수급자 대비 연금 수급자 비중으로 살펴보면 3.0%(‘13. 12), 2.0%(‘14. 3), 2.9%(‘14. 6), 4.1%(‘14. 9), 4.8%(‘14. 12)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5%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7〉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주: 개인연금 가입률은 원천징수 실적 기준으로 적격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2013).

다음으로 개인연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 여부에 따라 연금보험 및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연금저축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매우 낮아 노후소득보장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천만 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적격개인연금 가입률이 1.2%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일수록 연금저축 가입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 및 연령별 개인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40대 가구에서 가장 높고 50대가 되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주로 50대에서 퇴직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20〉 가구별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전체가구	24.0	35.4	39.0	36.7	36.5
독신가구	23.2	30.9	38.6	31.1	32.1
부부가구	26.4	37.8	39.1	37.5	37.7

주: 독신가구는 미혼가구 및 배우자가 없는 기혼가구 포함.
자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한편, 연금저축의 유지현황을 살펴보면, 연금저축의 유지건수는 477만 건(2014년 9월, 금감원 연금저축 포털)으로 상용근로자 1,037만 명(고용노동부 2012)의 절반 수준이다. 특히, 연금저축의 10년 후 유지율이 52.4%에 불과하여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1〉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균	95.5	86	80.2	72.4	52.4

자료: 류건식(201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가입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영국의 49.1%에 비해 30.3%p나 낮은 18.8% 수준이고, 개인 연금의 경우 캐나다의 35.1%에 비해 22.9%p 낮은 12.2%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II-22〉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단위: %)

구분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캐나다	한국
개인연금	24.7	18.1	29.9	25.7	35.1	12.2
퇴직연금	32.8	49.1	32.2	12.1	33.9	18.8
소계	41.1	—	—	—	52.6	—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2) 외국의 사적연금은 강제성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과 비교하기 위해 임의가입 사적연금만 대상으로 함.

3) 독일, 캐나다는 2008년 기준, 그 외 국가는 2009년 기준임.

자료: OECD(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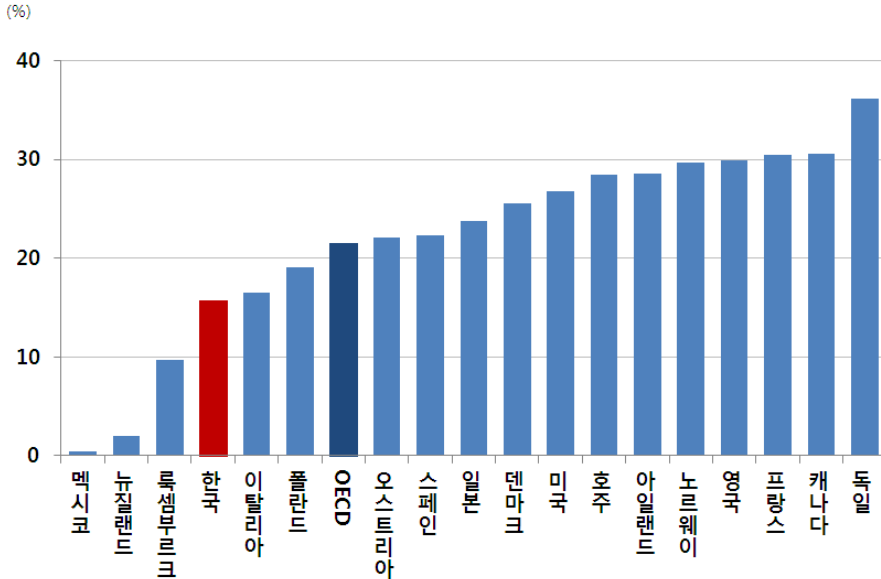
노후소득보장 방법으로 개인연금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선진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자산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³⁸⁾

셋째, 선진국에 비해 사적연금의 지원 수준이 낮다. 연금세제와 관련하여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세제 지원 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⁹⁾ 즉, 영국은 78,500달러(9천만 원), 미국은 16,500달러(1천 9백만 원)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연금세제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지원 수준은 낮아진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38) OECD(2014)(<http://www.oecd.org/daf/fin/private-pensions/globalpensionstatistics.htm>).

39)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세금 환급금을 IRP계좌에 넣어주는 제도가 있음
(<http://retirement.miraeasset.com/contents/167B4F963E057492E0530100007FA998>).

〈그림 II -8〉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주: 1)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2) 기여금액 대비 비율.

자료: OECD(2013); 류건식(2013).

고령화 및 노후소득보장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50대 이상의 퇴직 직전 연령층에 대한 추가적 연금세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리스터연금, 미국의 Catch-up Policy,⁴⁰⁾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이전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일랜드에서는 나이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화하도록 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s)⁴¹⁾가 있는데, 다른 연령대에 비해 50대는 50~54세, 55~59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제적격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

40) 50세 이상자에게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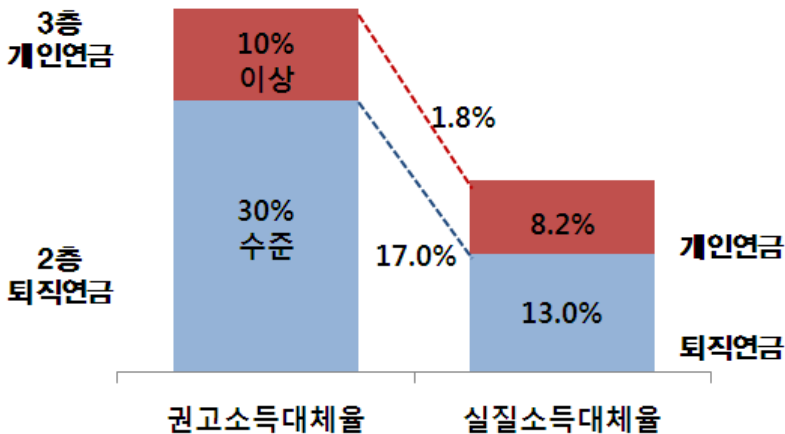
41) 소득공제율은 30세 이하 15%, 30~39세 20%, 40~49세 25%, 50~54세 30%, 55~59세 35%, 60세 이상 40%(<http://www.pensionsauthority.ie/en/>).

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연금저축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준비가 시급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금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도 8.2%(42)에 불과하여,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도 21.2%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정책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³⁾

〈그림 II -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



주: 1) 사적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2)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수익률은 각 협회 홈페이지 참조.

자료: 류건식(2013); 이태열 외(2014).

42) 실제수익률에서 1%p 증가한 수익률이 가입기간 15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으며, OECD 등 국제기구 권고 사적연금 소득대체율(40%)과 비교 시 18.8% 차이가 남(류건식 2013).

43) 미국은 사적연금활성화를 위해 50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의 추가 소득공제를 부여(Catch-up Policy)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미국 Catch-up Policy와 유사하게 2010년에 2011년 4월 이전에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한국연금학회 2012).

3)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후준비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현재의 노후준비 상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노후준비를 시작하는 시점도 매우 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노후자산은 유동성이 낮아서(부동산 등 실물자산 중심) 은퇴 후 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현행 자산구조를 바꾸고 연금소득을 충실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공·사적연금소득 준비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년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노후준비 기회를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나. 정년제 및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정년연장으로 인한 노후준비 기회의 정책적 성패는 무엇보다 이들 대상자들의 정년제와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절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보험연구원(2015)에서 조사한 정년제와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조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 조사에 의하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정년제가 있는 비율은 55.5%였으며, 이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비중이 52.5%, 55세 이상~60세 미만에서 정년을 규정하는 비율은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년이 60세 이상인 직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이직하는 과정에서 정년이 긴 직장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II-23〉 직장 정년제 적용 나이

(단위: %, 명)

특성별		사례 수	55세 미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전체		324	0.3	47.2	52.5
응답자 연령	20대	83	0.0	53.0	47.0
	30대	85	0.0	58.8	41.2
	40대	92	1.1	40.2	58.7
	50대	56	0.0	39.3	60.7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1.4%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9.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년연장 되더라도 조기퇴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48.7세였으며, 이 중 '55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퇴직하려는 비율이 38.0%로 가장 높았다.⁴⁴⁾ 60세 전에 조기퇴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유로는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가 78.9%로 가장 높았다.

〈표 II-24〉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단위: %, 명)

특성별		사례 수	의향 있음	의향 없음
전체		382	81.4	18.6
응답자 연령	20대	107	73.8	26.2
	30대	113	78.8	21.2
	40대	95	87.4	12.6
	50대	67	89.6	10.4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는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비율은 55.5%였으며, 채용 방법은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았다.

44) 50세 미만은 32.4%, 50세 이상~55세 미만은 29.6%였음.

〈표 II-25〉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 변화

(단위: %)

특성별		변화 가능성	회사채용방법		
			임금피크 정도에 따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될 것	어떻게든 정년연령 근로자를 퇴직시키려 할 것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것
전체(382명)		55.5	57.5	27.4	15.1
응답자 연령	20대	53.3	59.6	26.3	14.0
	30대	53.1	60.0	25.0	15.0
	40대	55.8	66.0	22.6	11.3
	50대	62.7	40.5	38.1	21.4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정년 연장 시 회사채용방법에 변화가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는 비율이 62.3%였으며, 임금 피크제 도입 시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는 최종보수기준 70%(41.6%)와 80%(38.7%)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26〉 정년 60세 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

특성별		적용률	합리적인 보수 수준(최종보수 대비 %)			
			90%	80%	70%	60% 이하
전체(382명)		62.3	2.9	38.7	41.6	16.8
응답자 연령	20대	65.4	4.3	38.6	34.3	22.9
	30대	61.1	2.9	39.1	47.8	10.1
	40대	62.1	0.0	37.3	47.5	15.3
	50대	59.7	5.0	40.0	35.0	20.0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정년 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2.1%였다. 추가 구입 금융상품으로는 적금·저축(47.2%), 연금저축(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구입하지 않을 이유로는 생활비 부족(49.8%), 자녀 교육 및 결혼비(37.6%) 등의 순이었다.

〈표 Ⅱ-27〉 근로기회 증가 시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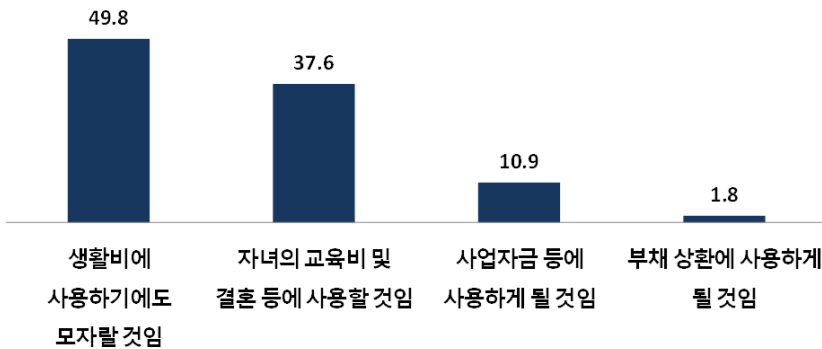
특성별		의향 있음 비율	금융상품 유형				
			적금·저축	연금저축	부동산	펀드	연금보험
전체(382명)		42.1	47.2	23.0	10.6	9.9	9.3
응답자 연령	20대	49.5	47.2	22.6	9.4	13.2	7.5
	30대	44.2	46.0	22.0	10.0	12.0	10.0
	40대	38.9	43.2	21.6	10.8	8.1	16.2
	50대	31.3	57.1	28.6	14.3	0.0	0.0

주: 1) 50대,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노후대비 금융상품 추가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그림 Ⅱ-10〉 추가 구입하지 않은 이유

(N=221/단위: %)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 있는 비율은 26.4%로 조사되었다. 크레바스연금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아무리 좋아도 구매할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높았다.

〈표 II-28〉 은퇴 이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인지 및 구매

(단위: %)

특성별		인지 비율	구입 의향 비율	구입하지 않는 이유				
				구매할 여유가 없어서	보장 기간이 짧아서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	추가적 세제혜택 없어서	기타
전체(593명)		20.4	26.4	43.6	29.2	19.8	6.7	0.7
응답자 연령	20대	13.0	36.9	33.6	35.2	22.4	8.0	0.8
	30대	25.7	37.3	36.2	31.9	20.6	9.2	2.1
	40대	23.5	26.7	38.0	31.8	23.4	6.8	0.0
	50대	19.8	22.7	47.1	29.9	18.2	4.3	0.5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한편,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는 강한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예, 비과세기준금액 3억 이상(37.0%))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I-29〉 추가적인 혜택하에서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여부

(단위: %, 만 원)

구분		연금보험 형태로 공급하되, 비과세 기준 금액이 3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15%는 되어야 한다.	연금저축을 과거와 같이 소득 공제 방식으로 해 주어야 한다.	기타
전체(883명)		37.0	35.4	27.1	0.5
응답자 연령	20대	36.0	47.2	16.0	0.8
	30대	41.8	26.2	31.9	0.0
	40대	40.6	31.8	27.6	0.0
	50대	38.0	34.2	27.3	0.5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 구입 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표 II-30〉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월평균 가입금액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10만 원 미만	10만 원~ 20만 원 미만	20만 원~ 30만 원 미만	30만 원 이상
전체(883명)		17.45	12.0	42.1	28.7	17.2
응답자 연령	20대	19.71	4.8	48.0	29.6	17.6
	30대	20.99	10.6	29.1	36.2	24.1
	40대	18.76	8.3	35.9	32.8	22.9
	50대	16.12	11.2	46.0	27.3	15.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볼 때, 정년연장은 자신의 근로기간을 증대시켜 노후준비를 위한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즉,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거나 크레바스연금과 같은 개인연금에도 추가가입 의사를 보인다는 점은 대상자들이 정년연장을 노후준비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추정

가. 사업장 현황

우리나라 사업장 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5만 3천 개소이며 이 중 60세 미만 정년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정년 규정이 없는 사업장이 정년연장 대상 사업장이 될 것이다. 이를 사업장 규모로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수는 0.17%이나,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95.9%로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정년연장 대상자는 2013년 기준 1천 99만 9천 명의 상용근로자 중에서 60세 미만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가 될 것이다.

〈표 Ⅲ-1〉 사업장 규모별 사업장 수 및 종사자 수(2013년 기준)

(단위: 천 개소, 천 명, %)

사업장 규모	사업장 수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수	기타 종사자 수
30인 미만	1,680(95.87)	8,330(54.30)	5,293(48.12)	3,036(69.95)
30~99인	58(3.29)	2,848(18.57)	2,178(19.80)	670(15.43)
100~299인	12(0.67)	1,866(12.16)	1,537(13.97)	329(7.58)
300 이상	3(0.17)	2,297(14.97)	1,991(18.10)	306(7.04)
전체	1,753(100.0)	15,340(100.0)	10,999(100.0)	4,341(100.0)

주: 1) '기타 종사자 수'에는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2) ()안은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통계포털,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종사자지위별)).

사업장 규모로 볼 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 비율은 18.1%, 30인 미만 사업장은 48.1%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사업장 규모별로 현재의 정년제 운영비율을 살펴보면, 다음 <표 Ⅲ-2>와 같다. 300인 이상 사업장 중 96%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30~299인 사업장은 74.1%,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22.1%만이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 단일정년제로 운영되고 있다⁴⁵⁾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표 Ⅲ-2> 사업장 규모별 정년도입 현황과 유형

(단위: %)

사업장 규모	정년제운영	단일정년	직급별정년	직종별정년	혼합정년
30인 미만	22.1(100.0)	19.4(87.8)	1.8(8.1)	0.6(2.7)	0.4(1.8)
30~299인	74.1(100.0)	62.0(83.7)	5.6(7.6)	4.4(5.9)	2.1(2.8)
300인 이상	96.0(100.0)	73.1(76.1)	6.9(7.2)	9.5(9.9)	6.5(6.8)

주: 1) 300인 이상 정년 현황은 전수조사 기준이며, 300인 미만 정년 현황은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기준임.

2) ()안은 정년제 운영하는 사업장 중 정년유형별 비율임.

자료: 전용일 외(2013)를 재구성함.

이러한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는 사업장 규모와 크게 관계없이 55세, 58세, 60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평균정년연령은 57.6세⁴⁶⁾로 조사되어 60세 이상으로 정년이 의무화되면 약 2.4년 정도의 근로 연장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혜택이 300인 이하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45) 단일정년을 채택하고 있는 비율은 84.4%임(전용일 외 2013).

46) 전용일 외(2013).

〈표 Ⅲ-3〉 단일정년제 도입 사업장의 정년연령 분포

(단위: %)

사업장 규모	54세 이하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이상	전체
30인 미만	0.9	33.9	6.4	8.7	24.8	2.2	17.9	5.2	100.0
30~299인	0.7	30.9	3.1	5.5	25.4	2.0	23.1	9.3	100.0
300인 이상	0.5	34.3	4.3	9.7	21.8	3.0	20.6	5.8	100.0

주: 300인 이상 정년 현황은 전수조사 기준이며, 300인 미만 정년 현황은 사업체 노동력 부가조사 기준임.
 자료: 전용일 외(2013).

나.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규모⁴⁷⁾

이제 이들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규모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1차적으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즉, 정년연장 대상자는 정년의무화가 없었다면 퇴직하였을 근로자가 2016년 이후에도 근로할 수 있게 되는 60세 미만의 근로자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하였거나 정년제를 규정하지 않았던 사업장의 근로자라 하겠다.

이를 단계별로 접근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연령만 조건으로 하여 포괄적인 대상 인구 수를 추정한다. 즉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4세부터 본격적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54~59세 인구인 4백 88만 7천 명이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2단계는 1단계에서의 인구 조건에 근로자성 여부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즉, 54~59세 인구 중에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⁴⁸⁾ 수를 활용하게 되면 임금근로자 수인 1백 23만 7천 명으로 대상자가 좁혀지게 된다.

3단계는 다시 2단계에서 추정된 수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대상자의 비율을 적용한다. 즉, 54~59세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가 최종 대상자가 될 것이므로

47) 세부추정 내용은 강성호(2015b)를 참고하기 바람.

48)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자영업자 제외).

비자발적 퇴직비율(10.8%)⁴⁹⁾을 적용하여 정년연장 대상자 규모를 14만 8천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Ⅲ-4〉 정년연장에 따른 적용대상자 추정(‘16년 추정치)

(단위: 천 명)

연령	인구 수 ¹⁾	근로자 수 ²⁾ (A)	비자발적 퇴직비율 ³⁾ (B)	정년연장 대상자 수 (A×B)
54세	868	298	9.4%	28
55세	865	202	12.8%	26
56세	843	197		25
57세	807	188		24
58세	771	180		23
59세	734	171		22
전체	4,887	1,237	10.8%	148

주: 1) 통계청에서는 5세 구간 인구 수(2016년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각 세별 인구 비중을 적용하여 2016년의 각 세별 인구 수를 산출함.

2) 각 세별 인구비중에 5세 단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곱하여 근로자 수를 산출함.

3) 고용보험통계연보상(2013년 기준) 비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구성된 비율임. 비자발적 퇴직 항목으로는 ‘질병·부상·노령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 ‘회사이전 등 근로조건변동’,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정년퇴직’이며, 이는 정년의무화 조치 이후에는 60세 이전에 강제적으로 퇴직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전체 인구); 국민연금연구원(2014b); 한국고용정보원(2014); 강성호(2015b) 재인용.

2016년 기준으로 추정된 정년연장 대상자 14만 8천 명은 자신이 속한 사업장의 기존 퇴직연령을 고려하게 되면 이번 정년의무화 조치로 최대 6년에서 최소 1년 정도 근로기간이 연장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동 연령대의 경황률, 조기퇴직률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54~59세 근로자 중 약 15만 명 정도가 매년 추가적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근로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⁰⁾

49)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2015), ‘201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서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항목으로 ‘정년퇴직’,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가족을 돌보기 위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외’로 구분하여 문의하고 있음. 동 결과에 의하면, 비자발적 퇴직(‘정년퇴직’,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비율은 18.6%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55~64세 인구 기준에 의한 비율이므로 여기에 54~59세 근로자만을 고려하게 되면 본 연구의 추정치(10.8%)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제 이들의 노후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이들의 근로연장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가. 정년연장의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⁵¹⁾

1)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정년의무화로 인해 국민·퇴직연금의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는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로 하였다. 정년의무화가 2016년에 시작되고 의무화의 최소연령이 60세이므로 제도 도입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연령은 60세보다 1세 적은 59세로 하였다. 54세로 정년이 시작되게 한 이유는 앞의 <표 Ⅲ-3>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둘째, 과거 및 미래의 임금소득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임금피크는 55세 이후 발생하여 59세까지 적용하되 1세 증가 시 전년 소득기준으로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50)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5. 7. 27)에 의하면,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내년부터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근로자 수가 향후 3년간('16~'18년) 연평균 10만 명(총 30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한국노동경제학회, '13. 10월).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여부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 8.4% 감소(미도입 시)할 수 있으며(연세대 산학협력단 '12. 11월, 정년제가 있는 사업장 940개소 대상 조사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92만 명('20년, 누적기준)에 대해 '16~'20년간 인건비 26조 원 절감, 청년 31만 명 신규채용 여력 확보(한경연, '15. 6월)가 가능하다고 보고 한 바 있음.

51) 동 내용은 강성호(2015b)를 재정리한 것임.

셋째, 수급시점 및 수급기간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급은 모두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61세(2013년 이후)에서 65세(2033년 이후)에 시작하여 84세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국민연금재정추계에 따르면 퇴직 후 85세에 가입자가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84세까지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넷째, 보험료율 및 급여 수준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은 1998년~현재까지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하고, 퇴직연금은 8.3%를 적용(현행 제도)하되 수지상등 기준으로 수급하는 것으로 한다. 최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제1차 개혁시점인 1998년,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시점⁵²⁾을 고려하여 2006년으로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는 9%, 급여 수준은 추정된 소득 및 가입기간을 현행 급여산식⁵³⁾에 적용하여 산출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납부금액의 현재만큼 수급⁵⁴⁾되는 것으로 한다.

다섯째, 모든 분석은 현재 시점인 2015년 기준으로 현재화하여 분석하되, 추가적인 가정은 <표 Ⅲ-5>를 참조하기 바란다.

52) 실질적인 도입시점은 2015년 12월부터이나, 분석 자료가 연 단위이므로 편의상 2006년부터 함.

53) 국민연금 연간 기본연금액(BPA)은 $BPA_i = \alpha \cdot (A + B_i) \cdot 0.05 n_i$ 에 의해 산출됨.

단, α : 소득대체율을 1998~2007년 60%, 2008년 50%, 이후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계수

A : 연금수급전년도(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_i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_i : 가입연수

54) 연간 퇴직연금액(RP)은 $RP_i = c \times B_i \times n_i / t$ 에 의해 산출됨.

단, c : 보험료율, B_i : 자신의 소득 수준, n_i : 가입기간, t : 퇴직(혹은 65세) 후 사망까지 기간

〈표 Ⅲ-5〉 분석가정(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활용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3년 소득 기준)	
분석대상	2016년 이후 54세 이상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 퇴직자 ※ 54~59세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 비율 적용	
임금 수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3년 임금소득에 임금상승률 적용하여 과거 및 미래의 연간 임금소득 산출	
임금피크	55~59세까지 1세 증가마다 임금소득 10% 감소	
가입기간	국민연금: 59세까지 가입, 퇴직연금: 60세까지 가입 ※ 최초 가입시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제1차 개혁시점인 1998년 이후,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시작 시점으로 볼 수 있는 2006년으로 함	
수급연령	국민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61(2013년 이후)~65세(2033년 이후)로 적용	
수급기간 (사망연령)	수급시작시점~84세까지 수급(85세 사망) ※ 수급시작시점은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하여 2013~2017년 61세, 2018~2022년 62세, 2023~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	
보험료율	9%	8.3%
연금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현행법 체계 고려 (2015년 46.5%~2028년 이후 40% 적용)	‘수익비=1’(수지상등)이 되는 연금급여 수준
기타	-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하여 분석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 모두 3% 적용 ※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수익률로 가정, 다른 제도(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 의한 구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자료: 강성호(2015b).

2) 분석방법

동 연구에서는 정년연장,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은 각각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승,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두 요소를 구분하여 비교·분석한다.

여기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는 이유는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에 이미 54~59세인 경우 수혜기간이 1~6년이나 2022년 이후에는 모두 6년의 기간이 늘어나

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되는 해인 2016년에 54~59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단기에는 대상 연령별 정년연장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 54세인 경우 최대 6년, 59세인 경우 1년의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이 59세까지이므로 54세의 경우는 최대 5년, 59세는 증가기간이 없다. 중·장기는 2030년에 54~59세인 근로자(2016년 40~45세)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중·장기를 2030년에 맞춘 이유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기간의 충분성이 확보⁵⁵⁾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분석결과

위 분석가정과 방법을 활용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 개선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3.9%, 중·장기적으로 28.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는 2.1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21.4%에서 23.9%(2.5%p)로 상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4.8년의 추가적인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이 23.5%에서 28.0%(4.5%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년연장으로 인한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4.3%, 장기적으로 9.2%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대상 근로자는 2.8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3.3%에서 4.3%(1.0%p)로 상승하고, 중·장기으로는 5.45년의 추가 가입기간을 확보하여 소득대체율은 7.0%에서 9.2%(2.2%p)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년연장으로 두 연금제도의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8.2%, 장기적으로 37.1%로 예상되나, 적정노후소득⁵⁶⁾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적

55)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성숙기를 제도도입 후 약 40년(20세 가입, 59세 퇴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인 1998년을 고려하여 가정한 것임.

으로 대상 근로자의 합산소득대체율은 정년연장을 전후하여 24.7%에서 28.2%로 상승(3.5%p)할 것으로 추정되며, 중·장기적인 합산소득대체율도 정년연장을 전후하여 30.4%에서 37.1%로 상승(6.7%p)할 것으로 추정되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은퇴자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할 경우 합산소득대체율은 단기적으로 26.8%, 중·장기적으로 35.7%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때 합산소득대체율 개선효과는 각각 2.1%p, 5.3%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6〉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전후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개선효과

(단위: %, %p, 년)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전체		
	연장 전 (A)	연장 후		연장 전 (A)	연장 후		연장 전 (A)	연장 후	
		피크 전 (B)	피크 후 (C)		피크 전 (B)	피크 후 (C)		피크 전 (B)	피크 후 (C)
단기 ²⁾	21.4	23.9 (2.1)	23.1	3.3	4.3 (2.8)	3.7	24.7	28.2 (3.5)*	26.8 (2.1)*
중·장기 ³⁾	23.5	28.0 (4.8)	27.3	7.0	9.2 (5.5)	8.5	30.4	37.1 (6.7)*	35.7 (5.3)*

주: 1) 강성호(2015b)의 분석가정을 활용하여 추정함.

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임.

3) 2030년 54~59세인 근로자(2016년 40~45세)임.

4) ()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가입기간(년) 변화임.

5) ()안은 정년연장 전후의 소득대체율 변화임(%p).

자료: 강성호(2015b)를 재정리함.

나. 정년연장에 따른 저축개선 효과: 개인연금 추가 가입가능성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연금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연장 기간 동안 근로소득 또한 증가하여 동 기간 동안 신규 자산이 축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Ⅲ-7〉에서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근로소득개선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가 조기퇴직하지 않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

56) OECD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은퇴자의 적정노후소득은 퇴직 직전 소득의 7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월평균 임금소득은 <표 Ⅲ-7>의 A항목이다. 여기에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조기퇴직자가 제외되어 산출된 것이다. 만일 여기에 비자발적 조기퇴직자를 포함하여 임금소득을 재산출하면 <표 Ⅲ-7>의 a항목이 된다. 즉, 기 퇴직한 임금근로자(비자발적 조기퇴직자)의 소득을 0이라고 가정할 경우 A항목의 소득은 a항목 소득인 1,874천 원으로 추정될 것이다.

<표 Ⅲ-7> 정년의무화 조치에 따른 연령별(54~59세) 소득(저축)개선 효과

(단위: 천 원, %)

연령	조기퇴직 비율 ¹⁾	월평균 임금소득(A) ²⁾	퇴직비용 고려한 평균소득(a) ³⁾	소득(저축) 개선효과(A-a)	개선율 (A-a)/a
54세	9.4%	2,184	1,979	205	10.4%
55세	12.8%	2,413	2,104	309	14.7%
56세		2,098	1,830	269	
57세		2,192	1,912	281	
58세		1,724	1,503	221	
59세		1,762	1,536	225	
합계	10.8%	2,101	1,874	227	12.1%

주: 1) 앞에서 제시한 비자발적 조기퇴직 비율임.

2) 고령화연구패널의 2012년 기준 월평균 임금소득임.

3) 정년의무 대상자(조기 퇴직자)의 임금소득을 0으로 하여 새로이 산출한 월평균 임금소득임.

자료: 강성호 · 신종각(2015).

따라서 정년의무화 전에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정년의무화로 노동을 지속하고 이들의 평균 소득이 2,101천 원이 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정년연장 대상자인 54~59세 임금근로자의 소득증대 효과 $((A-a)/a)$ 는 12.1%가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정년의무화 전후에 소비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가된 소득만큼 저축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개선효과는 곧 저축개선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 생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Ⅲ-7>을 해석함에 있어 유의사항으로는 55~59세의 조기퇴직비율을 12.8%로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조기퇴직자는 자신이 퇴직한 이후에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업자, 비경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고,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동 연령대의

평균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동 수치는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 개선 평가 및 과제

가. 노후소득 개선 평가

1)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은퇴 후 적정노후소득 수준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사회·경제적,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적정노후소득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 후 소득 수준을 의미하나, 연구자마다 다르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⁵⁷⁾ 다만, 적정노후소득(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논의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으며⁵⁸⁾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7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⁵⁹⁾

이러한 관점에서 정년연장 이후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57) 류건식 외(2009); 강성호(2015a); OECD(2011); OECD(2013) 등을 참고하기 바람.

58)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대체율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설문조사(예, ‘은퇴 후 적정 혹은 최소 생활을 위해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으나, 설문조사에 의한 적정소득은 조사시점 및 조사방법에 따라 유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소득대체율 방식을 많이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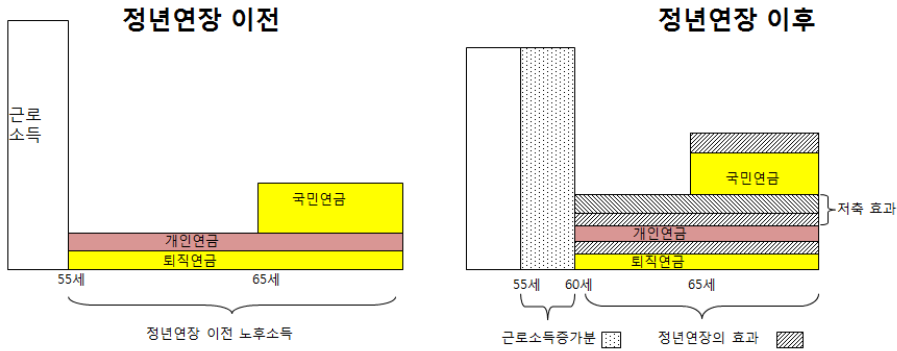
59) 연구자마다 다른 적정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분석가정 및 분석 자료의 차이에 기인함. 즉, 경제, 인구, 사회학적 가정 차이, 실증조사자료 활용 혹은 시뮬레이션 방법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

2)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평가

이번 정년연무화 조치가 대상 근로자(54~59세)의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개선시킬 것으로 보이나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무화는 근로기간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을 높여 합산소득대체율이 단기적으로 3.51%p, 중·장기적으로 6.70%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년연무화 이후에도 단기 및 중·장기 동안의 합산소득대체율(임금피크 적용)이 각각 26.8%, 35.7%여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만으로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년연장에 따른 소득개선 효과를 근로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그림형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Ⅲ-1〉에 의하면 정년연무화 이전의 소득원은 왼쪽 그림 형태로, 그 이후의 소득원은 오른쪽 그림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즉 정년연무화 이후 근로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모두가 증가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정년연장을 통해 자동적으로 증가하나, 개인연금은 임의가입 형태이므로 가입을 강제화하지 않으면 저축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소비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저축효과가 개인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의 개인연금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형 사적연금 즉, 기존의 개인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괄하는 개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Ⅲ-1〉 정년연장의 소득보장효과



나. 정년연장 후 남은 과제

1) 왜 지금을 노후준비 기회로 보는가?

그 동안 퇴직직전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한 노력은 많지 않았다. 다만, 베이비부머 등에 대한 공적측면에서의 접근은 시도된 바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지, 중산층까지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정년의무화가 현실적으로 노후소득 제고에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나타날 지는 의문이지만, 이는 정년의무화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이전에 비해 정년의무화 이후의 상황은 대상자들의 노후준비에 최고 6년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준비의 기회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보았듯이 정년연장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저축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를 노후소득 수단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왜 개인연금인가?

노후소득 증대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초고령기(예, 75세 이상) 이후 근로·사업 소득, 자산소득 등이 줄어들게 되면 노후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과 같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원이 중요하다(강성호 2015a).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상품 중 향후 가입선호도가 가장 높은 상품은 연금보험(32.0%)으로 조사된 경우도 있다(생명보험협회 2012⁶⁰⁾). 이를 가구주 연령별 기준으로 보면, 동일 기준으로 50대에서 장기 간병보험(33.2%), 연금보험(30.2%) 순으로 높았으며 저축성보험(13.9%), 변액보험(11.3%)을 장기 저축성 자산으로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재원문제와 기업(사업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다. 그러나 정년연장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증가하게 될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축적할 수 있다면 노후생활을 위한 유동성 자산 확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년연장 대상자의 상당수(42.1%)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증대된 소득으로 노후대비 금융상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고, 특히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의향이 있는 가입자도 상당비율(26.4%)로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러한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가입 유인으로는 강한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¹⁾

물론, 그 동안 고령화 및 퇴직에 임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에서의 노력도 있었다.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산업에서 출시한 크레바스연금이 대표적이라고

60) 생명보험협회(2012)에서 조사한 '생명보험성향조사'에서는 생명보험상품을 연금보험, 장기 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상해/재해보험, 저축성보험, 사망보험, 변액보험, 역모 기지로 구분하였음.

61) 이와 관련하여, 연금상품에 대한 세금혜택이 추가될 경우 가입의향 비율이 22.1%가 된다는 조사가 있음(생명보험협회 2012).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출시되어 있는 크레바스연금은 추가적 세제효과가 없어 판매실적은 답보상태이며, 또한 퇴직시점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향후 65세)까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교연금의 역할을 하기에는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건강보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⁶²⁾ 즉, 그 만큼 이들 세대의 노후준비가 불확실하지만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산업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개척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보다는 개인연금이 정년 의무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활성화에 초점을 둘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장에서는 개인연금이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수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인연금 활성화의 정당성 논리를 유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에서 정년연장 시점을 맞이하여 어떻게 개인연금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 정책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62) 연구자가 이와 관련하여 실무자와 논의한 결과 정년에 임박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를 세제혜택 및 인식 수준이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젊을 때 일찍 가입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동 연령대는 이미 퇴직연령이므로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발생함.

IV. 정년연장과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노후소득보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본 장에서는 정년연장 시점에서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경제행위 주체별로 개인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년연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 노후소득개선, 노인빈곤 완화, 연금시장 확대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노인빈곤을 완화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 활성화를 통해 빈곤 노인이 감소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논리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의 주요 내용은 <표 IV-1>에서 정리하고 있다.

<표 IV-1>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구분	분석내용
근로자	• 노후소득 개선 효과: 소득대체율개선 효과
정부	•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순조세지출 추정, 상대빈곤율로 산출) - 노인빈곤율(49.6%, 2013)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가? - 순조세지출 추정(지원에 따른 조세지출-기초생활보장비 감소액)
금융산업	•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연금시장 확대)

1. 신개인연금(가칭)⁶³⁾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가.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본 연구에서는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2012년 기준)의 개인 자료를 활용하였다. 동 자료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 자료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조사 자료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분석대상이 되는 54~59세의 임금근로자 샘플이 많다. 분석에 활용한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자는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54세부터 59세까지의 임금근로자로 하였다(〈표 Ⅲ-5〉와 동일). 다만, 향후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을 추가 가입할 경우 그 적용연령은 50세부터로 가정하였다.

둘째, 사업장에서의 자발적 퇴직비율은 16.1%로 가정하였다. 왜냐하면 고용노동부(2015)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퇴직비율이 16.1%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퇴직할 확률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퇴직연령은 60세로 하였다.

셋째, 임금소득은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2012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되, 임금상승률은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임금피크 적용은 〈표 Ⅲ-5〉에서와 마찬가지로 55세 이후 매년 1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넷째, 신개인연금 가입 시기 및 기간은 2016년부터 가입하여 59세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보험료율은 생명보험협회(2012)에서 세제혜택 추가에 따른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1.8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보험연구원(2015)에서도 크레바스연금⁶⁴⁾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63)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신개인연금은 현행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퇴직연금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인형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기존 제도와 별도(혹은 추가적인)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연금저축을 신개인연금의 기본형태로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음.

보아 자신의 평균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섯째, 신개인연금 가입률은 16.7%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생명보험협회(2012)에서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의향에 대한 조사결과, 50대가 16.7%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였다.

여섯째, 신개인연금 수급연령은 가교연금과 종신연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가교연금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될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직전까지 연계해 준다는 의미에서 60~64세에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종신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최초수급시점에서 20년 동안 수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일곱째, 연금급여액은 수익비⁶⁵⁾가 '1'이 되는 수준(수지상등원칙)에서 결정되며, 이를 소득대체율⁶⁶⁾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여덟째,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⁶⁷⁾(할인율로 사용) 모두 3%를 적용하며, 다른 제도(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등에 구축효과 및 대체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IV-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V-2>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세 근로자 중 정년연장 대상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 단, 향후 정년연장 대상자의 신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연금 추가 가입 시기는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자발적 퇴직 비율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비율 16.1% 적용(고용노동부 2015)
퇴직 연령	60세 퇴직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 임금상승률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

64) 크레바스연금이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을 의미함(이하 동일).

65) '낸 총보험료 현재'대비 '받게 되는 총연금액 현재'를 의미함.

66) '월평균 소득 현재'대비 '월평균 개인연금 급여액 현재'를 의미함.

67)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순수익률을 활용.

〈표 IV-2〉의 계속

구분	내용
임금피크	55세 이후 매년 10%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신개인연금 가입시기 및 기간	2016년부터 신개인연금을 가입하여 59세까지 유지 ※ 예를 들어, 50세는 2016년부터 59세까지 가입하여 10년 가입, 51세는 9년 가입, …, 58세는 2년 가입, 59세는 1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함.
신개인연금 보험료율	본인 소득의 10% ※ 생명보험협회(2012)의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 시 월 보험료는 21,8만 원, 보험연구원(2015)의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가입 예상금액은 17.45만 원(50대 16.12만 원)
신개인연금 가입률	16.7%(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 가입의향 비율) ※ 생명보험협회(2012) 조사에 의하면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에 대한 추가 가입의향이 있는 50대는 16.7%임.
신개인연금 수급연령	60~64세 수급(혹은 60세 이후 종신, 20년 수급)
연금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 ‘수익비=1’이 되는 연금급여 수준(수지상등원칙)을 산출 — 자신의 월평균 소득대비 추가적으로 가입한 신개인연금 급여액의 비율로 소득대체율 산출(10년 가입하고 5년 수급하는 경우와, 10년 가입하고 20년 수급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
기타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할인율로 사용) 모두 3% 적용 ※ 기금운용수익률은 사업비(수수료 등)를 차감한 순수익률로 가정 ※ 다른 제도(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등에 구축효과 및 대체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2) 분석방법 및 고려사항

위 가정에 추가하여 본 연구의 분석에 있어서 분석방법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정년 의무화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적용연령의 차이로 인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의 추가적 근로가능 기간은 최고 6년에서 최저 1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단기에는 최고 근로연장가능기간이 6년이 되지 못하는 2016년 시점의 55~59세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장기에는 최고 근로연장가능 기간인 6년이 되는 2016년 54세 이하인 임금근로자로 설정하였다. 즉,

2016년에 54세 이하인 임금근로자는 자발적 퇴직이 없다면 모두 최고 6년의 추가적인 근로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표 IV-3〉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과 연도로 표현한 것이다. 연령은 2016년 연령으로 표현된 것이므로 2017년 이후부터는 년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령도 1세씩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V-3〉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가정

구분 \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연장가능기간
장기	∴											6년
	50세											6년
	51세											6년
	52세											6년
	53세											6년
	54세											6년
단기	55세											5년
	56세											4년
	57세											3년
	58세											2년
	59세											1년

주: 1) 연령별로는 정년연장 대상자 개인효과, 연도별(근로자 수 고려 시)로는 정년연장의 산업적 혹은 거시경제 효과로 볼 수 있음.

2) 연령과 연도와의 관계는 예를 들어, 2016년 54세는 2017년 55세가 되고, 2018년은 56세가 되는 형태를 표현한 것임.

나. 분석결과: 노후소득 개선 효과

1)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만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

정년연장으로 근로기간이 증가하게 될 54~59세 임금근로자(14만 8천 명⁶⁸⁾)에게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신개인연금 소득대체율을 산출하면 다음 〈표 IV-4〉와 같다.

68) 〈표 III-4〉의 산출과정 참조.

먼저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54~59세인 근로자가 늘어난 근로기간만큼 가입하고 60세부터 5년 동안(64세 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4~59세의 소득대체율은 12.0~2.0%(전체 평균 7.3%)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일조건으로 60세부터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4~59세의 소득대체율은 3.0~0.5%(전체 평균 1.8%)로 추정되었다. 5년 동안 수급하는 것에 비해 20년 동안 수급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는데, 그 이유는 동일한 적립금을 20년보다 5년에 걸쳐 수급하는 것이 월(혹은 연간)급여액 측면에서 많기 때문이다.⁶⁹⁾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표 IV-4〉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소득대체율

(단위: %)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 ¹⁾		임금피크 적용 ¹⁾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4세	12.0	3.0	11.0	2.8
55세	10.0	2.5	9.0	2.3
56세	8.0	2.0	7.2	1.8
57세	6.0	1.5	5.4	1.4
58세	4.0	1.0	3.6	0.9
59세	2.0	0.5	1.8	0.5
합계	7.3	1.8	6.6	1.7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60~64세(5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3) 60~79세(20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분석가정에서는 신개인연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별도로 세제혜택(세액공제 방식)을 주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표 IV-5〉에서는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임

69)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DB형)과 같은 종신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사적연금의 총적립액을 일정기간 연금형태로 지급할 때 수급기간이 짧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추정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피크 적용여부로 구분하여 접근하되, 세액공제율은 각각 12%, 15%의 두 가지 경우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율을 12%로 한 이유는 현행 제도와 동일한 수준을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추가적으로 줄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이며, 현행 연금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15%가 선호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⁷⁰⁾ 이를 대표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표 IV-5〉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

(단위: 천 원, 억 원)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 ¹⁾				임금피크 적용 ¹⁾			
	세액공제율 12%적용 ²⁾		세액공제율 15%적용 ³⁾		세액공제율 12%적용 ²⁾		세액공제율 15%적용 ³⁾	
54세	1,446	(62)	1,808	(78)	1,326	(57)	1,657	(71)
55세	1,280	(50)	1,601	(63)	1,152	(45)	1,441	(57)
56세	981	(38)	1,227	(48)	883	(34)	1,104	(43)
57세	836	(32)	1,045	(40)	753	(28)	941	(36)
58세	541	(20)	676	(25)	487	(18)	609	(22)
59세	296	(11)	371	(13)	267	(9)	333	(12)
합계	931	(213)	1,164	(266)	842	(193)	1,053	(241)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현행 적격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3)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다고 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4) ()안은 연령별 총세액공제액으로 '억 원' 단위임. 즉, 각 세별 1인당 세액공제 규모 × 각 세별 추가 가입 대상자 수(추정 대상자 수 × 추가가입비율)로 산출.

5) 54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6년이며, 1세 증가 시 마다 가입가능 기간은 1년씩 감소하여 59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1년임.

1인당 세액공제 수준은 자신의 가입기간에 영향을 받는데, 54~59세 임금근로자는 각각 최고 6년~1년 중 가입기간 만큼 신개인연금을 통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금피크는 적용하지 않고 세액공제율을 12%로 적용한 경우 신개인연금을 가입하는 54~59세 임금근로자의 세액공제 수준은 평균적으로 1,446천 원~296천 원(전체평균 931천 원)으로 추정된다. 동일 조건에서 세액공제율을 15%로 적용할 경우 1,808천

70) 강성호 외(2015b).

원~371천 원(전체평균 1,164천 원)이 된다.⁷¹⁾

여기에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임금피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는 신개인연금 보험료를 소득의 10% 수준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감소로 인해 세액공제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2016년 상황에서는 54~59세 임금근로자의 근로연장 기간이 각각 최고 6년~1년으로 차별화되지만, 54세 이하 연령부터는 근로기간이 모두 6년 연장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 동안의 가입기간 연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016년 시점의 54세 임금근로자에 대한 효과를 정년연장의 장기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인구 수, 근로자 수, 소득 수준 등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

2)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50~59세 분석)

정년의무화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신개인연금 가입을 50세부터 허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앞의 분석대상에 추가적으로 50~53세를 고려하는 결과와 같다.

〈표 IV-6〉에서는 50~53세를 앞의 54~59세 기초통계와 연계하여 50대(50~59세)의 인구 수, 근로자 수, 추가대상자 수 및 연간근로소득을 보여주고 있다.

71) 동 수치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단기(2016~2020년) 상황에서 추정되는 금액이며, 장기적으로는 평균 6년의 효과(2016년 54세 이하 연령)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표 IV-6〉 50대(50~59세)의 기초통계

(단위: 천 명, 천 원)

연령	인구 수 ¹⁾	근로자 수 ²⁾	연간근로소득 ³⁾	추가대상자 수 ⁴⁾
50세	819	281	24,008	26
51세	830	285	24,858	27
52세	836	287	28,732	27
53세	852	293	25,080	27
54~59세	4,887	1,237	20,675	148
전체(50~59세)	8,223	2,383	22,808	256

주: 1) 통계청, 인구추계 2016년 기준 적용.

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2013년 기준, 천 명).

3)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수에서 추정 비자발적 퇴직비용을 적용한 것으로, 향후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 근로자 수.

〈표 IV-7〉에서는 임금근로자가 50세부터 추가적으로 신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경우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7〉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

(단위: %)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 ¹⁾		임금피크 적용 ¹⁾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0세	20.0	5.0	19.0	4.8
51세	18.0	4.5	17.0	4.3
52세	16.0	4.0	15.0	3.8
53세	14.0	3.5	13.0	3.3
54~59세 ⁴⁾	7.3	1.8	6.6	1.7
전체(50~59세)	11.4	2.9	10.6	2.6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60~64세(5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3) 60~79세(20년)까지 신개인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4) 54~59세의 분석결과는 〈표 IV-4〉의 합산 부분과 동일함.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50세부터 최고 10년, 최저 1년 동안 신개인연금을 가입한 후, 60세부터 5년 동안(64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0~59세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1.4%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를 60세부터 20년 동안(79세까지 수급) 신개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면, 50~59세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2.9%이다.

여기에 임금피크를 적용하는 경우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앞의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개인연금 보험료를 소득에 연동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동 분석결과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신개인연금을 도입할 경우 현재보다 종신연금 형태를 고려할 때 소득대체율 기준으로 약 2.6~2.9%p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2016년 59세인 경우는 최대 1년 정도만 추가가입 효과가 나타남)이므로 제도가입 혜택을 충분히 받게 되는 50세(최고 가입기간이 10년)가 퇴직하여 종신연금을 받게 되면 약 4.8~5%p의 소득대체율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의 <표 Ⅲ-6>에서 추정한 국민·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정년연장 후 임금피크 전후에 각각 37.1%, 35.7%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신개인연금을 합산한 전체 소득대체율은 42.1%(37.1%+5.0%), 40.5%(35.7%+4.8%)로 추정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²⁾

동 분석의 특징은 신개인연금을 조기에 가입하게 할수록 노후소득보장 제고에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년연장 대상연령보다 조금 일찍, 즉 50세부터⁷³⁾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⁷⁴⁾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8>은 50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신개인연금의 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추정액이다. 이는 <표 IV-5>에 50~53세의 결과를 추가한 것과 동일하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임금피크 적용여부로 구분하여 세액공제율은 각각 12%, 15%로 가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전반적인 설명은 <표 IV-5>에서와 유사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72) 여기에 기존의 개인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만큼 소득대체율은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여기서는 현재 연금저축, 연금보험의 가입률, 유지율 통계를 고려하여 소득대체율 산출이 불가하여 고려하지 않음.

73) 이와 관련하여 더 일찍 가입시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년연장 시기에 노후준비가 가장 시급한 연령이 50대라는 점에서 동 연령대에 초점을 둔 것임.

74) 미국의 Catch-Up Policy,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추가적 연금소득공제(한시적), 아일랜드의 PRSA제도가 이에 근거한다고 하겠음(본문 2장 참조).

〈표 IV-8〉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적 세액공제액 수준

(단위: 천 원)

연령	임금피크 미적용 ¹⁾				임금피크 적용 ¹⁾			
	세액공제율 12%적용 ²⁾		세액공제율 15%적용 ³⁾		세액공제율 12%적용 ²⁾		세액공제율 15%적용 ³⁾	
50세	3,056	(128)	3,821	(160)	2,904	(122)	3,629	(153)
51세	2,848	(120)	3,560	(151)	2,690	(114)	3,362	(143)
52세	2,926	(124)	3,658	(155)	2,743	(116)	3,429	(145)
53세	2,235	(96)	2,794	(119)	2,075	(89)	2,594	(111)
54~59세 ⁴⁾	931	(213)	1,164	(266)	842	(193)	1,053	(241)
전체(50~59세)	1,712	(681)	2,140	(851)	1,591	(634)	1,989	(792)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현행 적격개인연금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여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3)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한다고 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한 금액.

4) ()안은 연령별 총세액공제액으로 '억 원' 단위임. 즉, 각 세별 1인당 세액공제 규모×각 세별 추가 가입 대상자 수(추정 대상자 수×추가가입비율)로 산출.

5) 50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10년 이며, 1세 증가 시 마다 가입가능 기간은 1년씩 감소하여 59세의 최고 가입가능 기간은 1년임.

2.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 효과

본 절의 매출효과는 앞의 신개인연금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앞의 분석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개선효과(소득대체율, 세액공제 등)를 본 것이라면, 여기서는 납부액 전체인 매출액 효과를 본다고 하겠다.

기본적인 가정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만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

신개인연금의 총매출액을 연령기준으로 살펴보면, 54세 가입자 전체는 근로연장 가능기간 6년에 대해 납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519억 원의 연금적립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59세 가입자 전체는 근로연장 가능기간

1년에 대해 납부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88억 원의 연금적립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코호트의 총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연간 매출액과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16년에 54~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연간 매출액은 529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2016년 이후는 어느 정도 될까? 이에 대해서는 2017년 이후 신규로 진입할 54세자를 추정하고 가입률을 반영해야 산출할 수 있다. <표 IV-9>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2016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산출한 것임을 밝힌다.

<표 IV-9>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4~59세)

(단위: 억 원)

구분 \ 연도		'16	'17	'18	'19	'20	'21	총매출 효과 ²⁾
임금피크 미적용 ¹⁾	54세	94	91	88	85	82	80	519
	55세	89	86	84	81	78	—	419
	56세	83	81	78	76	—	—	318
	57세	91	88	85	—	—	—	263
	58세	84	81	—	—	—	—	165
	59세	88	—	—	—	—	—	88
	합계	529	—	—	—	—	—	1,772
임금피크 적용 ¹⁾	54세	94	82	79	76	74	72	476
	55세	80	78	75	73	71	—	377
	56세	75	73	70	68	—	—	286
	57세	82	79	76	—	—	—	237
	58세	76	73	—	—	—	—	149
	59세	79	—	—	—	—	—	79
	합계	485	—	—	—	—	—	1,604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총매출 효과는 각 세별로 합산하되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3) 가입률 반영하여 산출.

따라서 연도별 총매출액을 보기 위해서는 매 년도마다 54~59세인 임금근로자의 신개인연금 가입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016년의 인구구조, 가입상황 등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연간 매출 효과는 2016년의 매출액인 529억 원과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간 매출액 수준은 2016년 상황에서 인구구조, 가입상황 등에 따라 조금씩 변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임금피크를 적용하게 될 경우는 적용하지 않을 경우보다 매출액이 낮게 나타나는 데 신개인연금 가입액을 소득의 10%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매출액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금피크는 55세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므로 2016년 54세의 경우는 임금피크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2017년에는 55세가 되므로 임금피크를 적용받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한편, 정년연장 대상이 되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영업자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50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50세부터 신개인연금 가입 허용 시(50~59세 분석)

앞의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50세부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가정하면, 앞의 분석대상에 추가적으로 50~53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와 같다. 이를 고려하여 2016년에 50~59세인 임금근로자가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게 될 경우 연간 매출액은 1,017억 원으로 추정된다. 분석대상 및 가정은 앞의 <표 IV-6>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표 IV-10>은 신개인연금을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의 분석결과이다. 앞의 분석에서 54~59세를 대상으로 한 매출효과에 50~53세의 매출효과를 추가한 것과 동일하다.

다만, 50~53세를 가입에 허용하게 되면, 매출 발생이 50세부터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출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보장이 개선되는 논리와도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연령을 구분하여 부연설명하면, 50세(최고 10년의 추가가입 가능)에서 53세 가입자는 정년연장 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물론 이들도 54세 이후가 되면 발생하는 코호트가 됨), 신개인연금 가입기간을 허용하는 코호트여서 추가적인 매출액을 발생시

킨다고 할 수 있다. 즉, 50~53세 임금근로자를 추가적 가입시킬 경우 코호트 별로 각각 1,069억 원~796억 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54~59세 가입자는 앞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다.

〈표 IV-10〉 정년연장에 따른 신개인연금 판매 효과(50~59세)

(단위: 억 원)

구분	연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총매출 효과 ²⁾
임금피크 미적용 ¹⁾	50세	112	112	112	112	112	108	105	102	98	95	1,069
	51세	118	118	118	118	114	110	107	103	100	—	1,004
	52세	137	137	137	132	128	124	120	116	—	—	1,032
	53세	122	122	118	114	110	107	103	—	—	—	796
	54세	94	91	88	85	82	80	—	—	—	—	519
	55세	89	86	84	81	78	—	—	—	—	—	419
	56세	83	81	78	76	—	—	—	—	—	—	318
	57세	91	88	85	—	—	—	—	—	—	—	263
	58세	84	81	—	—	—	—	—	—	—	—	165
	59세	88	—	—	—	—	—	—	—	—	—	88
임금피크 적용 ¹⁾	합계	1,017	915	819	718	625	529	435	321	198	95	5,673
	50세	112	112	112	112	112	98	94	91	89	86	1,018
	51세	118	118	118	118	102	99	96	93	90	—	950
	52세	137	137	137	119	115	112	108	105	—	—	970
	53세	122	122	106	103	99	96	93	—	—	—	741
	54세	94	82	79	76	74	72	—	—	—	—	476
	55세	80	78	75	73	71	—	—	—	—	—	377
	56세	75	73	70	68	—	—	—	—	—	—	286
	57세	82	79	76	—	—	—	—	—	—	—	237
	58세	76	73	—	—	—	—	—	—	—	—	149
	59세	79	—	—	—	—	—	—	—	—	—	79
	합계	974	873	774	669	574	476	392	289	178	86	5,283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앞의 분석가정 참조.

2) 총매출 효과는 각 세별로 합산하되 2015년 기준으로 현가화함.

3) 가입률 반영하여 산출.

75) 동 추정결과와 신뢰성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통계연보의 연금저축 통계와 비교하면 2013년 기준 50대의 연금저축 납부액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로 산출됨. 그러나 국세통계연보 납부액은 연평균 270만 원으로 본 분석에서의 170만 원과 차이가 있고 본 분석에서는 추가적인 가입비율을 별도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국세통계연보와는 당연히 차이가 날 것임.

3.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노후 빈곤 완화효과

앞에서 분석한 노후소득보장, 판매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개인연금 도입(혹은 개인연금 활성화)의 필요성,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그 이유는 신개인연금에서는 현행 개인연금 세제혜택 외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연금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빈곤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데, 과연 신개인연금이 어느 정도의 빈곤을 완화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에 본 분석은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완화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정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분석에서도 노후소득보장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대상은 54~59세의 모든 연령으로 하되 이들이 노인이 되는 65세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신개인연금 노후빈곤 개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는데 <표 IV-11>에 이를 기술하고 있다.

소득 및 납부 관련 가정은 앞의 분석 시 활용한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⁷⁶⁾ 앞의 분석에 추가된 가정은 노인빈곤율이다. 즉, 신개인연금 가입으로 노인빈곤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신개인연금 가입 전 노인빈곤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3년 기준 49.6%이므로 이를 신개인연금 가입 전의 ‘기초노후빈곤율⁷⁷⁾’로 보았다. 여기에 신개인연금 가입으로 연금소득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율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를 분석한다.

76) <표 III-5>, <표 IV-2>의 분석가정과 동일.

77) 신개인연금 적용 전의 상황을 ‘기초’라는 용어로 표현함.

〈표 IV-11〉 분석가정(신개인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세를 분석대상으로 하되, 이들이 65세 이후가 되는 상황을 고려함.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 활용 ※ 임금상승률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
빈곤율 및 빈곤선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활용(2013년 49.6%)하여 추정된 상대빈곤선 적용
빈곤완화 효과	신개인연금 적용 후 노인빈곤율이 감소한다면 그 만큼 빈곤완화 효과 발생
기타	위 가정을 원용 ※ 2012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IV-12〉는 신개인연금 가입대상을 54~59세와 50~59세로 구분하여 가입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노인의 탈빈곤⁷⁸⁾ 효과와 빈곤율 개선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54~59세에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수령 시 5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탈빈곤 비율은 2.7%였으며, 동일 조건하에 20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면 탈빈곤 비율이 2.4%로 분석된다. 이때 빈곤율은 각각 1.3%p, 1.2%p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5년 연금수급보다 20년 연금수급의 경우가 탈빈곤 및 빈곤율 개선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축적된 연금자산을 연금화(annuity)하는 과정에서 수급기간이 길수록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작아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50~59세 가입) 연금자산 축적 효과가 커서 빈곤개선 효과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내용은 위와 동일하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78) 여기서의 탈빈곤은 분석대상 집단이 정책도입 전후로 빈곤에서 비빈곤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의함. 따라서 분석대상 집단에서 빈곤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음.

〈표 IV-12〉 신개인연금 가입 전후의 탈빈곤 효과(노인전체)

(단위: %)

구분		가입 후 가입 전	탈빈곤 효과			빈곤율 (개선효과)
			비빈곤	빈곤	전체	
54 ~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5 (△1.3)
		빈곤	2.7	97.3	100.0	
		전체	51.5	48.5	10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7 (△1.2)
		빈곤	2.4	97.6	100.0	
		전체	51.3	48.7	100.0	
50 ~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7.8 (△2.1)
		빈곤	4.2	95.8	100.0	
		전체	52.2	47.8	10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	100.0	48.1 (△1.7)
		빈곤	3.5	96.5	100.0	
		전체	51.9	48.1	100.0	

주: 1) 동 집단의 초기 빈곤율은 49.8%임.

2) ()안은 초기 빈곤율(49.8%)에서 해당집단의 빈곤율을 뺀 수치로 단위는 %p임.

동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빈곤율 개선 효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개선 정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았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인빈곤율은 45.1%에서 34.7% 약 10%p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용하·김원섭 2013).

기초연금은 모두 조세재원으로 충당되지만, 신개인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조세재원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이해된다.

V. 정년연장과 개인형 사적연금 발전 방향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소득 개선과 함께 빈곤율도 감소하고, 나아가 개인연금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의 활성화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연금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개인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개인연금의 기본적 정책방향이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가입기간은 길어야 하고, 연금형태로 수급되도록 하는 것이 취지에 맞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연장 대상자들 또한 개인연금 가입기간이 길도록 하고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방향에서 다른 코호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정년연장 대상자는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노후준비를 위한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정년의무화를 통한 노후준비 기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 연금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3장과 4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년연장과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가.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공·사연금 협력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부분의 연구들⁷⁹⁾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체계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화되어 어느 정도는 정책의 실효성이 실현되고 있으나,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상당히 많은 정책개선안들이 제안되었지만 실효성 문제로 인해 개인연금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이외에도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⁸⁰⁾ 강제성이 부족하여 가입과 해지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연금은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완전히 사적시장에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유인(세제, 보조금 혜택 등)을 통한 활성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재정문제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미온적 정책⁸¹⁾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 과정에서 선진국의 연금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1980년대를 전후하여 고령화 과정의 공적연금 개혁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공·사 간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는 연금정책을 실현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79) 류건식·김동겸(2015), 강성호(2015b) 등 참고.

80) 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세제혜택, 노후자산으로서 역할 등 연금형태의 수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일시금 형태로 수급을 선호하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81)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됨.

나. 지원 확대를 통한 가입강제 및 활성화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연금가입 및 수급 시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연금에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부여한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나,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가입하고 일시금 지급을 제한하여 대부분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또한 리스터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한다는 특징이 있다(강성호 외 2015a).

한편,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매칭 기여방식⁸²⁾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IRA(개인퇴직계좌)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시 매칭기여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IRA(개인퇴직계좌) 개설 비율은 3%에 불과하였으나, 20%와 50%의 매칭기여를 제공하는 기업의 IRA 개설 비율은 각각 8%, 14%로 나타나 매칭 기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Duflo et al. 200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고 퇴직연금까지 고려하더라도 노후준비 수준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미국의 매칭 기여방식 사례는 우리나라의 개인형 사적연금의 발전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연금(개인형 퇴직연금 포함)은 사적연금인 만큼 세제, 보조금 혜택 등이 제공되더라도 시장기능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다양한 연구에서 리스터연금 등 강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된다. 세제지원을 하려면 사적연금보다는 공적연금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가구가 아닌 저소득층

82) 1994년 개인연금 도입과 더불어 매칭기여 방식으로 개인연금 납입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았음. 이는 매칭기여 도입 초기에는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추가적인 복지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분석이 있음(삼성은퇴연구소 내부자료).

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재정과 대상자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세제지원은 노후빈곤 완화를 통해 미래의 복지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물론 당장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대상 확대가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후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퇴직을 맞게 될 정년연장 세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면서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수급시점이 향후 65세까지 증가한다는 점에서 동기간에 발생할 연금수급 공백기를 매우는 가교연금으로서 신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54~59세에만 신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수령 시 5년 동안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 탈빈곤 비율은 2.7%로 추정되었고, 이를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탈빈곤 비율은 4.2%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개인연금 추가 가입 여력을 가교연금화를 통해 노후소득 공백기를 메울 수 있다는 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연금화 강화

연금화 전략은 일시금(lump sum)이 아닌 연금(annuity) 형태로 인출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는 장수리스크 해지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며, 연금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화 정책을 살펴보면,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규제⁸³⁾가 존재하는 것 외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⁸⁴⁾ 또한 가입단계에서도 5년 이상 유지할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어 유지율이 낮고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급여 수준 또한 높지 않아 연금형태로 수령할 유인이 크지 않다. 유사사례로 퇴직연금

83) 11년 이상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8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3. 8) 참고.

의 수급이 주로 일시금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연금화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적립금이 적어 연금형태로 찾을 유인이 거의 없었기 때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연금선택에 있어서는 연금퍼즐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앞에서 개인연금 적립금을 많이 축적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되, 연금 수급 시 연금형태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가입 시에 이미 수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수급단계의 제도 개선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연금화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일시금에 대해서는 세제를 강화하고, 연금수령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현재 종합소득대상 시 종합과세) 혹은 비과세(현행 세율 3.3%)하는 것으로 하여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가. 정년연장 세대에 특화된 연금상품 개발

정년연장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으로는 크레바스연금 상품이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된 바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매실적은 답보상태이다. 이러한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으로 세제혜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정년연장 세대에 대해 세제혜택이 강화된 크레바스연금이 적극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크레바스연금에 대한 공급방식으로, 현행 연금저축에 대해 연령별로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혹은 가입예정자)를 대상으로 연령 및 소득조건을 고려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연금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준비가 덜된 은퇴 전후 세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혜택의 집중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50세 이상자 중 일정 소득⁸⁵⁾ 이하인 가입자에 대해 강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사적연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 12%(개정 시 15%)에 추가하여 3~5%p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⁸⁶⁾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선진국들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50세 이상자가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Catch-up Policy,⁸⁷⁾ 영국의 55세 이상자에 대한 특례연금 정책,⁸⁸⁾ 아일랜드의 연령에 비례하여 소득공제율이 변하는 세제적격연금인 PRSA 등이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나.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현재 연금상품은 연령, 성별 등을 반영하나 건강상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신형 연금상품에 있어서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가입에서 배제되거나 꺼려질 수 있다. 특히, 정년연장 대상자는 다른 근로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년연장 대상자는 연금상품에 대한 가입유인이 떨어지거나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 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 세대가 적극적으로 연금상품에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비표준형 연금 상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표준형 연금(Substandard Annuities)이 발달한 영국의 사례⁸⁹⁾는 참고가 될 만하다.

85) 예를 들어,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중위소득 수준은 5,500만 원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86) 이와 관련하여, 제4장에서 신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소득보장, 소요재원, 빈곤 개선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정책적 효과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됨.

87) 50세 이상자에게 추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88) 영국의 경우 '11년 4월 이전 55세가 되는 개인에게 연간 공제액 한도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연금 추가적립을 도모하는 일회성 정책을 도입한 바 있음.

89) 영국의 표준화체연금은 2000년대 중반부터 판매실적이 급증하여 2012년 약 45억 파운드까지 증가하였다가 2013년 현재 약 38억 파운드로 조사됨(Towers Watson 2014).

다.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장수리스크에 대비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정년연장 대상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노후자산 수준에 비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⁹⁰⁾이라고 볼 수 있다.

장수리스크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의 '2013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1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1세(남자 77세, 여자 8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 72세와 비교하면 21년 동안 9세나 늘어났으며, 연간 평균 0.43세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연평균 기대수명 증가율로 표현하면, 43%가 된다. 실로 엄청난 장수화를 경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성장여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조만간 장수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태열 외 2014).

장수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과 종신연금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급여 수준 낮을수록 종신연금의 적정비율 수준이 올라가야 은퇴파산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권기동 2013⁹¹⁾). 공적연금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강화하여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필요성은 매우 증가한다. 무엇보다 은퇴에 임박한 정년연장 대상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실제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급여 수준도 낮고, 퇴직연금 또한 적용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 특화 사적연금으로 미국에서는 고연령거치연금(ALDA)이 성장하고 있는데,⁹²⁾ 이를 통해 장수리스크를 줄이면서도 보험료가 저렴한 연금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90) 정년연장 세대들은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평균과 비교할 때 기대여명이 높을 것임.

91) 이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월 급여액이 80만 원일 경우 종신연금 비중을 40%로 했을 때 은퇴파산 확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국민연금 급여액이 60만 원으로 감소하면, 종신연금 비중은 85%까지 올라야 은퇴파산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

92) 세부사항은 강성호 외(2015a)를 참고하기 바람.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정년 의무화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노후준비 수준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정년 의무화를 노후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여유 자금을 개인연금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개인연금 활성화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효과와 신개인연금 가입 시 발생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년연장 이후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첫째,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효과와 관련하여 정년연장 대상자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들 대상자가 정년연장으로 인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추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정년연장 대상자는 14만 8천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합산소득대체율(임금피크 적용)은 정년 의무화 이후 중·장기적으로도 35.7%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연장 이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증가하지만 이것만으로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년연장에 따른 저축 가능 수준을 추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대상연령층의 평균적인 노후소득은 연 12.1% 수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증대된 노후소득 여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정년연장 대상자가 추가적인 세제혜택 주어지는 신개인연금에 별도로 가입

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개인(근로자), 산업, 정부 입장에서 추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개인연금 추가가입으로 노후소득이 개선되고, 매출액 증가로 연금시장도 활성화되며, 빈곤 완화를 통해 정부의 세제지원 정당성 논리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고려하여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개인연금의 기본적 정책 방향이 다른 코호트들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과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으로 사적연금의 강화를 통한 공·사연금 협력, 지원 확대를 통한 가입강제 및 활성화, 연금화 강화를 제안하였다.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으로는 정년연장 세대에 특화된 연금상품 개발,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장수리스크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년이 의무화되어 노후준비가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장수리스크는 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므로 지속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적, 준강제적 체계에서 정년연장으로 노후소득보장 제고에 기여하지만 적정노후소득을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년연장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2), 「적정 노후소득수준에 대응한 공·사적 연금소득원 추정」, 『응용경제』, 제14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_____(2015a),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_____(2015b), 「정년연장의 공·사 연금소득 개선효과와 한계」, 『KiRi Weekly』, 제353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정원석(2015b),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CEO Report』, 보험연구원.
- 강성호·신종각(2015), 「은퇴전후 세대의 고용특성과 정년연장의 소득보장 효과」, 2015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 강성호·정원석(2014),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KiRi Weekly』, 제285호, 보험연구원.
- 강성호·정원석·김동겸(2015a),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 고용노동부(2015),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5. 6. 4), “임금체계 개편, 상생 노동시장 위한 시대적 과제”.
- _____(2015. 7. 8),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
- 국민연금연구원(2014a), 『2014 국민연금 생생통계』.
- _____(2014b), 『국민연금 통계연보 2013』.
- 국세청(2013), 『국세통계연보』.
- 금융감독원보도자료(2013. 8),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금재호(2011), 「중·장년층의 고용불안과 정년연장」, 『월간노동리뷰』, pp. 61~75, 한국노동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2015. 7. 27), “청년에게 내일을,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 권기동(2013), 「은퇴자산배분에서 종신연금의 적정비율」,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권혜자(2010), 『연령세대별 일자리 변화와 고용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 김경아·김현수(2013),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보장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김대근(2014), 「부부 적정 은퇴생활비 추정,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No. 11」,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김대일(2004),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I』, 한국노동연구원, pp. 7~34.
- 김주영(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대 청년층의 고용추이 및 정책적 시사점」, KIET 산업경제, 산업경제연구원.
- 김준영(2011), 「고연령층 고용변동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업체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34권(1), 한국노동경제학회, pp. 71~101.
- _____(2012), 「일본 고령자 고용연장제도의 최근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고용이슈』, 제4권 제4호, 한국고용정보원.
- 김현수·김원식(2015),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 류건식(2013), 「사적 연금의 역할과 정책 방향」, 「새정부의 연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자료.
- _____(2014),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국회연금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 류건식·김동겸(2015), 「공적연금 보완형 국가의 사적연금 기능 제고와 시사점」, 『KiRi Weekly』, 제348호,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봉주·김동겸(2009), 「사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수준 평가」, 『보험학회지』, 제83집, 한국보험학회, pp. 93~121.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다양한 장수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 『Special Report』, No. 11.

- 박성준(2006),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지원방안의 문제점』, 한국경제연구원.
- 박종현 · 최강욱 · 김보희 · 임준혁(2012), 『청년층과 고령층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 MONTHLY BULLETIN, 한국은행.
- 방하남 외(2012),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2-05,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12. 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 8. 29),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4. 1. 16), “2012년 개인연금 가입현황 분석”.
- 보험연구원(201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4), 『한국인의 은퇴준비 2014』, 은퇴백서.
- 생명보험협회(2012), 『생명보험성향조사』.
- 서울대 노화 · 고령사회연구소(2013. 5), 「한국의 베이비부머 패널 연구」, 2차년도 보고서 심포지엄 자료집.
- 서재만(2012),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경제현안분석』, 제78호, 국회예산정책처.
- 세계보건기구(WHO)(2013), 『2013년 세계 보건 통계(World Health Statistics 2013)』.
- 안주엽(2011),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2014), 「합리적 정년연장과 정책과제」, 『산업관계연구』, 제24권 제1호, pp. 87~108,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이순재(2010), 「노후소득보장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연금시장리뷰』, 10호, 현대증권.
- 이승길(2013), 『고령자의 정년연장과 규제완화』, 노동법논총.
- 이용하 · 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2호, pp. 1~25, 사회보장학회.
- 이재호(2015),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 국제경제리뷰, 제2015-19호, 한국은행.
- 이찬영 외(2011), 「인구고령화와 경제적 파장－성장잠재력, 생산성, 세대 간 일자리

- 대체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 이태열·강성호·김유미(2014),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윤상하·이지선(2011),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시대, 청년의 은퇴가 시급하다」, LG 경제연구원.
- 장인성(2012), 「고령화가 근속 및 연공임금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경제현안보고서』, 제79호, 국회예산정책처.
- 전용일·임병인·박소은(2013),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용노동부·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
- 정진호·김정환·김동배·이인재(2011), 『노동력 고령화와 임금체계 혁신』, 연구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지은정(2012), 「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연구보고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4), 「2014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 한국고용정보원(2014), 『고용보험통계연보 2013』.
- 한국연금학회(2012),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5. 1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NEWSLETTER.
- 현대경제연구원(2010),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 『글로벌산업구조 재편과 우리의 대응전략(VIP Report)』.
- Börsch-Supan, A. and R. Schnabel(2010),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in Germany”, NBER Chapters, in: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pages 147~16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Inc.
- Card, D. and T. Lemieux(2001), “Can Falling Supply Explain the Rising Return to College for Younger Men? A Cohort-Based Analysis”, *The Quarterly*

- Journal of Economics*, Vol. 116, No. 2, pp. 705~746.
- Duflo, Esther, William Gale, Jeffrey Liebman, Peter Orszag, and Emmanuel Saez(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 – and Middle – 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pp. 1311~1346.
- Gruber, Jonahan, Kevin Milligan and David A. Wise(2010), “Introduction and Summary”, Edited by Jonahan Gruber and David A. Wise,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pp. 1~46.
- Hebbink, G. E(1993), “Production Factor Substitution and Employment by Age Group”, *Economic Modelling*, Vol. 10, No. 3, pp. 217~224.
- Jousten, A., M. Lefèbvre, S. Perelman, P. Pestieau(2010), “The Effects of Early Retirement on Youth Unemployment: the Case of Belgium”,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NBER Book Series*, pp. 47~76.
- Kalwij, A., A. Kapteyn, K. D. Vos(2009), “Early Retirement and Employment of the Young”, *RAND Working Paper Series*, No. WR-679.
- Munnell, Alicia H. and April Yanyuan Wu(2012), “Will Delayed Retirement by the Baby Boomers Lead to Higher Unemployment among Younger Workers?”, *Boston College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Working paper*, No. 2012-22.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 _____(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 _____(2014), *Pension Markets in Focus*.
- Oshio, T., S. Shimizutani, A. S. Oishi(2010), “Does Social Security Induce Withdrawal of the Old from the Labor Force and Create Jobs for the Young?

The Case of Japan”,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Retirement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to Youth Employment, NBER Book Series*, pp. 217~241.

Towers Watson(2014), Enhanced annuity sales down 29% after 2014 Budget.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국민연금공단(<http://www.nps.or.kr/>)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
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
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
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
이아름·이해랑 2015.11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후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
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
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운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최창화·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 2015-7 일반손해보험 효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7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8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영문발간물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정기간행물 · 보험동향 · 고령화 리뷰 · 보험금융연구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56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강 성 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정 봉 은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교 상학 석사,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chungbe@kiri.or.kr)

김 유 미

성균관대학교 보험계리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yumi_kim@kiri.or.kr)

정책보고서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발행일 2016년 2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32-9 94320

979-11-85691-03-9 (세트)

정가 10,000원